

수 · 위탁기업간 생산분업 체제의
효율화 방안
- 제조업을 대상으로 -

1999.4.

한국경제연구원

전 인 우

발 간 사

계약관점에서 보면 수·위탁기업은 하나의 기업처럼 활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법적 독립성, 위탁기업의 수탁기업에 대한 선택의 변경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양자관계는 대립의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수·위탁기업간 생산분업 체제를 통해 수·위탁기업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위탁기업은 시장거래를 통하는 경우보다 소재·부품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효과를 얻는다. 수탁기업의 전문기술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또한 규모의 비대화에 의한 경영상의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반면 수탁기업은 계획생산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도모할 수 있고 위탁기업으로부터 기술 및 경영지도를 받거나 자금지원을 받음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덜 수 있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계 되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는 국민경제 성과의 향상이라는 형태로 종합되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를 통해 국민경제의 성과가 항상 향상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위탁기업간에 협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도 수탁기업간 경쟁 및 위탁기업간 경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수·위탁기업간 생산분업 체제의 효율화를 통해 국민경제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간에도 수·위탁기업간 거래관계로부터 얻는 장점 강화 및 단점 해소 방안을 둘러싸고 여러 논의가 있었다. 기존 논의와 차별화 하여 본 보고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수·위탁기업간 생산분업 체제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보고서가 바람직한 수·위탁기업간 생산분업 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정책의 방향 설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두고자 한다.

목 차

I. 서 론

II. 수·위탁기업간 생산분업 체제에 대한 이해

1. 생산분업 체제의 분류
2. 생산분업 체제의 생성과 기능 : 거래비용론 접근
 - (1) 거래유형 선택의 문제 : 시장과 기업
 - (2) 준통합적 조직과 분업체계
 - (3) 효율적 거래관계와 분업유형

III. 우리나라의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 현황과 정부정책

1. 분업생산의 현황
 - (1) 분업생산 체제의 비중과 특성
 - (2) 불공정거래와 협력 현황
2. 지정계열화 정책의 추이와 현황
 - (1) 정책 추진과정
 - (2) 관련 법제 현황
 - (3) 계열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

IV. 수·위탁기업간 생산분업 체제 결정요인과 산업성과

1. 분석모형 및 자료의 설정
 - (1) 분석모형의 구축
 - (2) 추정방법 및 자료
2. 실증분석 결과와 시사점
 - (1) 제변수의 기초통계 분석
 - (2) 분석모형의 추정

V. 수·위탁기업간 생산분업 체제의 효율화 방안 모색

1. 일본의 수·위탁기업간 분업체제 : 자동차산업의 사례
 - (1) 수·위탁 분업체제의 생성과 변화과정
 - (2) 정책적 시사점
2. 정부정책에의 제언

VI. 결 론

발 간 사

계약관점에서 보면 수·위탁기업은 하나의 기업처럼 활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법적 독립성, 위탁기업의 수탁기업에 대한 선택의 변경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양자관계는 대립의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수·위탁기업간 생산분업 체제를 통해 수·위탁기업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위탁기업은 시장거래를 통하는 경우보다 소재·부품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효과를 얻는다. 수탁기업의 전문기술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또한 규모의 비대화에 의한 경영상의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반면 수탁기업은 계획생산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도모할 수 있고 위탁기업으로부터 기술 및 경영지도를 받거나 자금지원을 받음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덜 수 있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계 되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는 국민경제 성과의 향상이라는 형태로 종합되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를 통해 국민경제의 성과가 항상 향상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위탁기업간에 협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도 수탁기업간 경쟁 및 위탁기업간 경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수·위탁기업간 생산분업 체제의 효율화를 통해 국민경제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간에도 수·위탁기업간 거래관계로부터 얻는 장점 강화 및 단점 해소 방안을 둘러싸고 여러 논의가 있었다. 기존 논의와 차별화 하여 본 보고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수·위탁기업간 생산분업 체제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보고서가 바람직한 수·위탁기업간 생산분업 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정책의 방향 설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두고자 한다.

I. 서론

한 나라의 산업조직의 구조를 반영하는 기업간 분업체제는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중 하나이다. 1990년대 들어 미국의 완성차업체들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수직통합 생산체제를 일본식의 준통합(quasi-integration) 생산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¹⁾ 반면 일본은 준통합 생산체제하에서 준통합 생산체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품의 공유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생산체제 변화중 일본의 역사적 경험은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한국경제는 그간 기업간 분업생산 체제의 확산으로 수탁기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조직상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살리고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위탁 및 수탁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가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들간에 견해차가 있으며,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계열화 정책을 통해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를 유도하고 수·위탁기업간 전속적(專屬的) 도급거래의 확대, 거래의 장기화·지속화·공정화 등을 지향함으로써 부품산업의 육성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균형 문제 해소 등의 효과를 얻고자 했다. 그러나 전속적 도급거래 관계에 대해 비판이 있어 왔다. 비판의 요지는 전속적 거래관계가 협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경쟁제한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수탁기업간 경쟁을 유발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속적 거래관계를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반면 이와 상반된 시각에서 전속적 도급거래 관계를 탈피한 시장지향형의 거래는 개발된 부품 및 원료 등에 대한 무임승차 및 협력을 약화시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또한 지정계열화업종제도는 여전히 유

1) 기업간 분업생산 체제는 소재·부품의 조달방식에 따라 한 기업내에서 소재·부품을 내제화하는 수직통합 생산체제, 기업간에 계약을 통해 소재·부품을 생산·납품받는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 소재·부품이 시장으로부터 구입·가공되는 생산체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생산체제중 특히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는 준통합, 도급거래, 하도급거래, 하청제, 계열화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용어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발주자는 도급기업, 위탁기업 등으로 발주를 받은 기업은 하도급 기업, 수급기업, 수탁기업 등으로 표현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기업간 분업생산 체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효한 정책이며 적극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한편 전속적 거래와 시장지향형 거래의 조합형태로서 수·위탁기업간 협력구도하에서 도급거래를 개방화하는 새로운 거래형태를 추구하는 시각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상의 차이에 주목하여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의 형성요인을 분석하고 이의 효율화를 위한 정부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간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으나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거나 분업생산 유형과 성과에 대한 분석은 간과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거래비용론(transaction cost theory)을 중심으로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에 대한 이론 및 기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의 현황과 이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지정계열화업종제도 및 공정거래 정책 등에 대한 관련 법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의 형성요인 및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가 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 등에 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얻어진 주요 결과를 토대로 제3장에서의 법제 분석결과와 함께 효율적인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 재편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II.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에 대한 이해

1. 분업생산 체제의 분류

기업간 분업생산 체제는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소재·부품이 어떤 방식에 의해 조달되느냐에 따라 <표1>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기업내 거래란 소재·부품을 자체생산하고 이를 이용해 완제품으로 조립하는 생산활동이 한 기업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직통합 생산체제를 의미한다. 수직통합 생산체제하에서는 위계(hierarchy)에 의해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시장내 거래란 시장을 통해 여타 기업이 생산한 소재·부품을 구입한 후, 이를 가지고 완제품을 만드는 생산체제이다. 이러한 생산체제하에서는 시장가격을 매개로 소재·부품의 수급이 이루어진다.

<표1> 분업생산 체제의 분류

(시장내 거래)	(도급거래)	(기업내 거래)
시장교환	수·위탁기업간 분업 거래선 다변화 전속적 거래	수직통합

시장내 거래는 다수의 소재·부품의 공급기업과 다수의 소재·부품 수요기업간에 이루어지는 거래관계를 상징하고 있지만 소재·부품 수요 및 공급기업간에 일단 거래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소수 거래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즉, 시장을 매개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의한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통해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거래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분업생산 체제는 기업내 거래와 시장을 매개로 한 시장내 거래의 중간형태로서 도급거래 또는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 등으로 정의된다.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는 독립법인간에 이루어지는 분업체제로서 시장내 거래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지만 계약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기업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가깝다고 볼 수 있

다.²⁾

소재·부품을 수요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장거래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줄이고 소재·부품 공급기업과의 수직통합을 통한 조직관리 비용의 부담을 줄이려는 동기에서 수·위탁기업간 분업체제를 선호할 수 있다. 소재·부품 공급기업의 입장에서도 시장거래에 따른 거래비용을 줄이고 여타 공급기업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이러한 분업생산 체제를 선호하게 된다. 수·위탁기업간 분업체제는 위탁기업에 대해 안정적인 공급을 수탁기업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수요를 보장해줄 수 있다. 그러나 수·위탁기업의 법적 독립성, 위탁기업의 수탁기업에 대한 선택의 변경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수·위탁기업간 분업체제는 대립의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2. 분업생산 체제의 생성과 기능 : 거래비용론 접근³⁾

(1) 거래유형 선택의 문제 : 시장과 기업

Coase는 『기업의 본질(*The Nature of the Firm*, 1937)』에서 생산요소의 배분이 시장처럼 가격메카니즘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이론적인 해석을 부여하고, 기업이 영위하는 경제활동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는 기업에 대한 이론적 해석을 부여하기 위해 가격메카니즘을 사용하는 비용(the cost of using the price mechanism), 개방된 시장에서 교환수단에 의해 거래를 성사시키는 비용(the cost of carrying out a transaction by means of an exchange on the open market), 또는 이를 단순화하여 시장화 비용(marketing costs)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의미로서 『사회적 비용의 문제(*The Problem of Social Costs*, 1960)』에서는 시장거래의 비용(the costs of market transactions)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시장거

2) 수·위탁기업간에 자본출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기업간 독립성은 낮아지게 되며, 일정수준 이상의 소유·지배관계가 형성되면 하나의 기업집단내에서 소재·부품이 조달되는 분업체제로 발전하게 된다.

3)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수·위탁거래의 생성에 대해 경제의 이중구조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하청론 내지 수탈론으로 불리우는 이러한 접근법에 따르면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을 경기변동의 안전판으로 활용함으로써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거래비용론 관점에서 수요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수직통합이 증가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거래비용론의 실증분석 결과는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를 경기변동의 완충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전자의 시각과는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

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거래(deal)를 할 사람을 찾고, 거래를 원한다는 것을 알리고, 교섭(bargain)을 이끌어가는 협상(negotiation)을 하고, 계약을 하고, 계약이 지켜지는지 등을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Coase(1988), P. 6].

시장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Coase 이래 여러 학자에 의해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으로 표현되어져 왔다. Dahlman(1979)은 거래비용을 모색과 정보비용(search and information costs), 교섭과 의사결정비용(bargaining and decision costs), 단속과 실행비용(policing and enforcement costs)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Hill and Hoskisson(1987)은 거래비용을 당사자간의 원활한 거래관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불확정한 계약을 입안하고 감시하는 비용과 거래 당사자 중 한 쪽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가져오는 비용으로 보고 있다. Carlton and Perloff(1990)에 따르면 거래비용은 다른 기업과 사업을 하는 비용이다. 거래비용은 협정(agreement)이 이행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키는 비용 뿐만 아니라 협상하는 초기의 비용도 포함된다. 어떠한 협정도 가능한 모든 경우를 상세히 기술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사건에 비추어 협정을 수정하는 것도 중요한 비용중 하나이다.

Williamson(1975)은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라는 인간적 요인에 대한 두가지 가정을 가지고 기업에 대한 거래비용 이론을 정교화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제한적 합리성 및 기회주의가 환경적 요인인 불확실성 및 소수의 교환관계(small-numbers exchange relations)와 결합됨으로써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야기된다.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가 불확실성과 소수교섭의 문제와 결합하여 발생하는 거래비용의 존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출현이다. 내부적으로 생산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에 의존할 것인가는 거래비용과 관련된다. 비록 개인들간의 계약에 의해 완전히 분권화된 방법으로 생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거래를 위해서 비용이 발생된다는 사실은 거래를 조직화하는 비용이 시장을 통한 거래시의 비용보다 작을 경우 기업이 조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Coase(1988), P. 7].

기업의 규모에 대한 제약은 기업내 거래비용이 시장을 통한 거래비용과 동일할 때 가해진다. 즉, 기업이 거래비용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제거되지도 않고 하나로 된 거대기업이 존재하지도 않는 이유는 때론 기업에서의 자원배분

비용이 시장보다 크기 때문이다[Carlton and Perloff(1990), P. 18]. 고용인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를 점검(check)하기 위해 감시비용(monitoring costs)이 발생한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시장을 통하지 않은 거래의 가능성이 높을수록 보다 많은 감시가 요구된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감시비용이 기업내에서의 자원배분의 이득을 넘어서고, 하나의 거대기업을 갖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된다. 기업은 내부 효율성을 감시하는 비용이 시장을 이용하는 거래비용보다 작을 때 내부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게 된다.

(2) 준통합적 조직과 분업체제

수·위탁기업간 분업체제는 앞서 살펴본 시장과 기업의 중간위치에 있는 거래형태로서 준통합적인 기업간 거래관계를 통해 거래관계를 효율화 시킬 수 있는 거래유형이다. 거래관계를 수직통합을 통해 내부화하는 경우에 시장을 통한 거래비용보다 조직관리 비용이 더 들고 시장을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 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 때문에 사후적인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준통합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면 시장거래와 수직통합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⁴⁾

Imai and Itami(1984)의 논의를 중심으로 준통합적 거래관계의 장점을 설명해 보기로 하자. 자원배분은 (M_1) , $(M_1 + O_1)$, (O_1) 으로 구성되는 거래참가자의 의사결정 원리[(1)]와 (M_2) , $(M_2 + O_2)$, (O_2) 로 구성되는 거래참가자의 자격 및 상호관계 원리[(2)]에 의해 이루어진다. M_1 은 의사결정 원리로서 거래결정이 가격 또는 이와 동등한 신호가 정보의 매개체로 이용되는 경우이다. O_1 은 공동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명령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M_1 + O_1)$ 은 거래에 대한 최종결정은 명령에 의해 행해지지만 과정상 정보교환 및 자유경쟁원리가 작용하는 경우와 거래에 대한 최종결정이 정보교환 및 자유경쟁원리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과정상 명령적 영향이 작용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M_2 는 거래참가자의 자격 및 상호관계 원리로서 거래참가자에 있어 자유로운 진입 및 퇴출이 자유로운 상태를 나타낸다. O_2 는 거래참가자의 관계가 고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우를 나타낸다.

4) Monteverde and Teece(1982)에 따르면 준통합은 전속적인 자산을 수직적으로 통합하지 않고 소유권만을 설정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다. 준통합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 소유권 행사를 통해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시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어할 수 있으므로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M_2 + O_2$)는 원칙적으로 고정적·지속적 관계를 유지하지만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존재하는 경우와 원칙적으로 시장진입과 퇴출이 자유롭지만 거래참가자간에 고정적·지속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는 경우를 나타낸다.

이러한 구도하에서 자원배분 메카니즘은 순수시장, 조직같은 시장, 중간조직, 시장같은 조직, 순수조직 등의 원리가 작용되는 경우로 구분된다. 순수시장, 조직같은 시장원리가 작용하게 되는 경우는 「시장메카니즘」, 순수조직, 시장같은 조직원리가 작용하게 되는 경우는 「조직메카니즘」에 의해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나타낸다. 조직과 같은 시장원리 및 시장같은 조직원리는 각각 시장원리 및 조직원리에 의한 자원배분의 실패를 보완해줄 수 있다. 나머지는 「중간조직」 원리에 의해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일본의 산업조직적 특성의 하나인 중간재 공급기업과 수요기업간에 형성되어 있는 협조적인 수직적 거래관계는 이러한 중간조직을 형성시켜왔다. 거래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지만 거래를 그만둘 자유가 있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는 O_2 도 M_2 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있으나 전적으로 권위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M_1 + O_1$)의 의사결정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준조직적(quasi-organizational) 또는 중간적(intermediate)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상과 같은 준통합적 분업생산 체제는 미국의 경우에도 나타나지만 일본의 경우보다는 널리 확산되어 있지 않다[Imai and Itami(1984), p.296].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준통합적 분업생산 체제가 발전되어 왔다.⁵⁾ 이러한 분업생산 체제가 발전하게 되는 것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에 분업생산이 이루어짐으로써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에게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선 위탁기업의 이득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시장거래보다는 부품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수·위탁 분업생산을 통해 주문된 제품이 생산·거래되기 때문이다. 물론 납품이 지연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탁기업의 생산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수탁기업의 전문기술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 즉, 수탁기업의 전문생산 체제에 의해 부품의 품질이 향상됨으로써 제품의

5) 한국에서의 준통합적 분업생산 체제의 발전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나타나기 위한 전제조건은 부품의 기술적 적정규모가 작고 그 종류가 많아 수직통합으로 인한 장점보다 수직통합으로 인한 단점이 커야 한다. 수직통합의 장점이 단점보다 크다면 위탁기업은 수요변동과 기술혁신의 필요성에 대비하여 일부를 내제화할 수도 있다. 셋째, 경기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위험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위험분산의 효과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계약형태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양기업간의 시장지배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위탁기업의 시장지배력이 클수록 수·위탁 분업생산을 통해 위탁기업이 얻을 수 있는 위험분산 효과는 크게 나타나게 된다. 넷째, 규모의 비대화에 의한 경영상의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생산시설과 관련된 자본설비 비용의 절감으로 효율적인 자본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수탁기업의 저렴한 노동비용을 이용함으로써 인적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반면 수탁기업의 이득은 계획생산으로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도모할 수 있고 전문기술의 축적이 용이하다는 점과 위탁기업으로부터 기술 및 경영지도를 받거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를 통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쌍방이 항상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다[정병휴·윤창호(1986), pp. 31-32]. 쌍방간에 이득을 얻게 될 가능성은 위탁기업이 수직통합에 의한 내제화 또는 해외 경쟁 기업과 계열관계에 있는 소재·부품생산 기업으로부터의 수입에만 의존할 수도 없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윤추구를 목표로 삼을 때 나타난다. 이러한 목표를 갖고 있다면 위탁기업은 자신의 장기적 이윤목표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수급기업을 유도하려는 유인을 가지게 된다. 위탁기업은 금융시장에서 신용도가 낮은 수탁기업의 재정보증을 서기도 하고 자본 및 기술지원을 하며 친목회 결성 등을 통해 공동체적인 유대의식을 쌓아감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 효과를 상호 배분하게 된다. 반면 위탁기업이 소재·부품조달을 해외수입에 크게 의존하거나 또는 단기적인 이윤추구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장기적인 기술축적 및 성장을 저해하게 되면 위탁기업의 생산기반도 장기적으로 취약하게 된다. 위탁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수탁기업이 겪게 되는 어려움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제품수요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 더욱 커진다.⁶⁾ 수탁

기업이 전문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요침체에 단가의 하향조정도 이루어짐으로써 분업생산이 가져다주는 수요의 안정성에 의한 이득이 반감될 수도 있다. 납품대금의 지연을 비롯한 계약의 임의변경도 빈번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분업생산 관계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의 장단기 이윤에 관한 상호 이해와 공동체 의식하에서 가능하며, 이러한 상태에 이르려면 수탁기업은 어느 정도의 독자적인 기술을 축적함으로써 위탁기업으로부터의 신뢰성 확보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준통합적 분업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중간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 시장거래와 수직통합 체제의 스펙트럼내에서 효율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해간다. 예를 들어 일본 도요다자동차의 경우 1937년 회사설립 이후 부품기업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통합-분리-중간조직 체제를 유지하는 순환 양상을 보였지만 거래관계의 유형은 상황에 따라 선후가 바뀔 수도 있다[김기찬(1995), p. 94]. 내제 및 주문생산 또는 시장거래의 비율은 그 산업의 특성과 위탁기업의 경영조직에 의해 변화된다[정병휴·윤창호(1986), p. 51]. 또한 위탁기업과의 장기적인 유대관계에 의한 협력의 정도, 협력기간이나 조직의 안정성은 위탁기업 제품이 성숙된 상품일수록 강화되며 위탁기업 제품의 수명이 짧고 기술혁신 속도가 크면 공급구조의 재편이 수시로 나타날 수가 있다[정병휴·윤창호(1986), p. 54].

(3) 효율적 거래관계와 분업유형

앞서 시장거래의 한계를 수직통합을 통해 해결하고 준통합을 통한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의 구축 등을 통해 수직통합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음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어떠한 분업생산 체제가 보다 효율적이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결론지을 수 없다.

통상 전통경제학에서는 시장메카니즘을 통해 기업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기업간 관계를 밀접화시키는 자본적 결합이나 인적교류 등에 대해 독점자본에 의한 시장지배나 기업지배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비용론의 관점은 시장거래의 비효율적인 측면을 간파하고

6) 수탁기업의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인해 위탁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폐해도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므로 논의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거래를 내부화 내지 준통합화함으로써 위계조직하에서 효율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가정하에 거래빈도와 투자의 특정성을 기준으로 기업간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지배(efficient governance) 유형을 분류한 Williamson(1985)의 분석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자.⁷⁾

Williamson에 따르면 투자의 특정성이 낮은 경우에는 시장지배(market governance)가 투자의 특정성이 높은 경우에는 단일지배(unified governance)가 효율적인 지배형태가 된다.⁸⁾ 이 경우에 있어서 거래빈도는 중요하지 않다. 시장지배에 의한 거래관계의 형성은 거래대상이 표준화 되어 있으므로 대체적인 거래 당사자들이 무수히 존재함으로써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한하게 된다. 반면 투자의 특정성이 어느 정도 있거나 높은 경우에 거래빈도에 따라 효율적인 지배형태는 3자간 지배(trilateral governance)와 쌍방간 지배(bilateral governance)로 나누어진다. 3자간 지배는 불확실성에 따른 계약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기회주의적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수직통합을 통한 단일지배에 대한 유인이 생기거나 거래의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분쟁발생시에 제3자의 개입에 의해 분쟁을 조절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배형태이다. 협회에 의해 거래가 조정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쌍방간 지배는 기회주의적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거래빈도가 높기 때문에 신뢰할만한 공약(credible commitments)에 의해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배형태이다.

이와 같이 기업간 거래관계의 유형은 특정적 투자의 정도를 중심으로 예상되는 거래비용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동일한 수준의 교섭력을 가진 기업간 거래시 나타나며, 거래기업간 교섭력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거래양식의 선택에 있어서 거래비용 개념 이외에 거래주체의 교섭력이 조직화 리더쉽의 원천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김기찬(1995, p. 59)]. 즉, 기업간 조직화의 시점에서 보다 큰 교섭력을 가진 기업이 준지대를 확대하고자 하는 교

7) 거래비용 이론에 있어서의 Williamson의 공헌은 기업과 시장간의 선택을 설명하는 거래비용의 중요성과 기업의 내부조직과 관련된 논의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확고히 했다는 점이다. 이에 더하여 Williamson(1979)은 거래의 특성과 지배구조의 관련성 분석을 통해 투자의 거래특정성이 높아질수록 시장계약(market contracting)으로부터 장기계약이 선택되고, 궁극적으로 내부조직이 선택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선택(institutional choice)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8) 시장지배는 시장내 거래, 단일지배는 위계조직 원리가 적용되는 기업내 거래로서 수직통합, 쌍방간 지배 및 3자간 지배는 도급거래로 구분될 수 있다.

섭력이 작용하게 되며, 이로 인해 핵심기업과 주변기업의 관계가 형성된다. 교섭력의 차이는 특정적 자원에의 투자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의 특정적 자원의 투자가 동일한 경우 교섭력은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에 의해 이루어진 투자의 특정성이 비슷한 경우에 양자간에는 비슷한 교섭력이 형성되며, 투자의 특정성 정도에 따라 시장거래 또는 수직적 통합 또는 구속적 거래관계 등을 맺게 된다. 그러나 양자간에 투자의 특정성이 다른 경우 교섭력에 차이를 갖게 되며, 양자간에는 구속적 계약관계가 형성된다. 판매기업이 우위의 교섭력을 갖는 경우 구매기업에 비해 거래비용 절감의 효과가 높아진다. 반면 구매기업이 우위의 교섭력을 갖는 경우 구매기업의 거래비용 절감효과가 높아진다. 이때 구속적 계약의 형태는 양자간의 상대적인 투자의 특정성 정도에 따라 준시장 또는 준내부조직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조직화의 리더쉽은 교섭력이 높은 기업이 갖게 된다.⁹⁾

9) 준시장 또는 준내부조직의 관계가 형성되는냐의 여부는 양자중 한 기업에 의한 투자의 특정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한 기업에 의한 투자의 특정성이 낮거나 없는 경우에 또 다른 기업에 의한 투자의 특정성 수준에 관계없이 준시장 관계가 형성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中田善啓(1986)를 참고하기 바란다.

Ⅲ. 우리나라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 현황과 정부정책

1. 분업생산의 현황

(1) 분업생산 체제의 비중과 특성

<표2>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전체 중소기업중 수·위탁 생산체제에 있는 기업의 위상을 사업체수, 종업원수, 매출액, 부가가치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제조업 내의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의 변화를 살펴보면 도급거래는 점차 확대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1976년 중소기업중 19.7%만이 도급거래 관계를 해왔으나 1996년 현재 73.6%의 중소기업이 도급거래를 하고 있다. 이러한 도급거래의 양적 확대는 계열화 업종 및 품목 지정제도의 역할도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정 계열화 업종 및 품목이 감소해 온 1984년 이후에도 수·위탁기업의 비율이 더욱 증가하고 있어, 도급거래 확대에 제도적 요인 이외에도 경제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⁰⁾ 자료접근의 한계상 1993년에 국한하여 중소기업내에서 도급거래를 하는 기업들의 종업원수, 매출액, 부가가치액 비중에 대해 살펴보면 종업원수는 과반수를 넘는 비중을 매출액과 부가가치는 5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0) 아래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계열화 업종 및 품목은 1980년대 초에 크게 증가하였으며, 1984년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지정계열화업종 및 품목의 현황>

	1979	1980	1983	1984	1985	1990	1995 ¹⁾	1999
업종	5	6	43	44	40	42	36	24
품목	41	71	1,445	1,553	1,256	1,160	1,053	838

주 : 1)1995년 8월 10일 변경 고시

자료 : 중업기업협동조합중앙회(1993, 1996), 중소기업청(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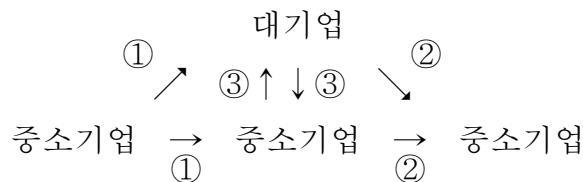
<표2> 제조업내 중소기업 부문내에서의 수·위탁 분업체제 위상

구분	사업체수 (개)				종업원수 (천명)	매출액 (10억원)	부가가치 (10억원)
	1976	1986	1993	1996	1993	1993	1993
도급거래 관련 중소기업	4,564 (19.7)	18,250 (42.5)	47,980 (65.4)	62,099 (73.6)	1,037 (56.0)	49,509 (47.1)	15,585 (51.2)
중소기업	23,165 (100)	42,941 (100)	73,364 (100)	84,374 (100)	1,853 (100)	105,049 (100)	30,452 (100)

주 : ()는 비율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976, 1986, 1993, 1997)
 최동규·김광희(1994)

수·위탁기업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분업생산 유형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표3>과 같이 3가지 경우로 나타낼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이 위탁만 하는 경우이다[① 유형]. 이러한 경우는 위탁중소기업이 유통업을 영위하거나 수탁기업이 생산한 소재 및 부품을 가지고 생산공정을 추가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때 위탁은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위탁만 하는 경우와 달리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이 수탁만 받는 경우이다[② 유형].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이 수·위탁거래를 동시에 하는 경우이다[③ 유형]. 이러한 도급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수탁기업이 재도급을 주거나, 여러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고 또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또는 드물 것으로 보이지만 대기업에게 위탁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3가지 분업생산 유형중 중소기업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경우는 위탁만을 하는 ① 보다는 위탁만 받는 ② 또는 ③과 같이 수탁과 위탁을 동시에 하는 경우일 것이다.

<표3> 중소기업에서 본 기업간 수·위탁 형태



주 : 화살표는 위탁의 방향을 나타냄.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표3>에서와 같은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유형의

비중을 살펴보면 <표4>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1996년 현재 중소기업체중 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은 73.6%이다. 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탁만을 하는 기업과 수탁만을 하는 기업, 위탁과 수탁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업들로 나누어 살펴보면 각각 6.7%, 24.0%, 42.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도급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경우 상당부분은 수·위탁거래를 동시에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위탁만 하는 중소기업은 당초의 예상대로 매우 비중이 낮다. 한편 수·위탁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체의 비중을 시간을 흐름에 따라 살펴보면 1994년과 1995년 사이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4년 현재 수·위탁거래를 하지 않던 중소기업체는 전체 중소기업체의 42.4%에 이르렀으나 1995년에는 27.9%로 크게 줄어들었다.

<표4> 제조업내 중소기업의 도급유형 (%)

구분	위탁만			수탁만			수·위탁			독립기업		
	1994	1995	1996	1994	1995	1996	1994	1995	1996	1994	1995	1996
비중	8.7	14.7	6.7	23.4	26.4	24.0	25.5	31.0	42.9	42.4	27.9	26.4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994, 1995, 1997)

한편 위탁기업의 속성을 살펴보기 위해 위탁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보면 <표5>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6년 현재 위탁기업중 중소기업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52.6%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혼합된 경우(22.9%)와 대기업만으로 이루어진 경우(24.5%)를 고려해볼 때 중소기업에 의한 위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산업별로 보면 음식료품과 기타 운송장비 부문에서 대기업만에 의한 위탁비중이 중소기업만에 의한 위탁비중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5> 중분류 제조업내 수탁기업의 거래업체 분포(1996년)
(%)

구 분	위탁기업의 위상		
	중소기업	대기업	혼합
음식료품	33.0	46.6	20.4
섬유제품	68.1	19.5	12.4
의복 및 모피제품	47.2	38.3	14.5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65.9	23.2	10.9
목재 및 나무제품	60.8	19.7	19.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37.5	11.6	50.9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73.1	12.9	14.0
화합물 및 화학 제품	44.9	19.8	35.3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62.4	9.4	28.2
비금속광물 제품	64.4	16.2	19.4
제1차 금속산업	53.1	19.9	27.0
조립금속 제품	60.4	13.1	26.5
기타 기계 및 장비	38.0	34.3	27.7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58.5	25.4	16.1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39.6	22.8	37.6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42.9	28.3	28.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53.5	33.9	12.6
자동차 및 트레일러	33.4	34.2	32.4
기타 운송장비	26.7	54.6	18.7
가구 및 기타	65.3	20.4	14.3
제조업	52.6	24.5	22.9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997)

우리나라 수·위탁분업 체제의 현황에 이어 그 특성을 도급거래의 중층화 정도와 전속성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표6>참고].

첫째, 1차 도급거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도급관계가 단층화 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산업별로 보면 도급관계의 중층화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으나 3차 단계를 넘어서는 비중은 매우 미약하다. 반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부분의 경우는 여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급관계의 중층화가 진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도급관계는 대기업을 위탁기업으로 하는 중소수탁기업의 전속적 도급거래 구조와 복수의 중소기업을 위탁기업으로 하는 중소수탁기업의 비전속적 도급거래 구조로 나누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¹¹⁾ 그리고 제조업내의 중소기업들은 주로 제조업내에서 도급관계를 맺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1) 이와 같은 전속적 구조의 특성은 거래단계별로 거래모기업의 수를 분석한 최동규·김광희(1994)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그들은 이에 더하여 도급단계별 수탁기업의 납품액 자료를 이용해 거래단계가 높아갈수록 전체 모기업에 대한 납품비중이 높아지고 주거래 모기업에 대한 납품비중은 낮아짐을 밝힘으로써 거래단계가 높을수록 비전속적 경향이 있음 보여주었다.

<표6> 제조업내에서의 수·위탁 분업체제의 특성(1996년)

구 분	도급거래 단계(%)			업체당 평균 거래모기업수					
	1차	2차	3차 이상	제조업		유통업		건설/기타	
				중소 기업	대 기업	중소 기업	대 기업	중소 기업	대 기업
음식료품	97.8	2.2	0.0	3.3	1.4	0.3	0.2	0.0	0.0
섬유제품	78.3	19.2	2.5	5.8	0.8	0.5	0.0	0.0	0.0
의복 및 모피제품	78.5	20.6	0.9	2.3	1.0	0.2	0.0	0.0	0.0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83.5	16.3	0.2	3.9	0.8	0.5	0.1	0.0	0.0
목재 및 나무제품	90.0	8.8	1.2	5.8	1.2	0.1	0.1	1.9	0.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65.3	31.4	3.3	7.9	2.1	0.6	0.0	0.0	0.0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66.9	32.5	0.6	4.7	0.9	0.3	0.1	0.6	0.1
화학물 및 화학 제품	86.2	13.8	0.0	8.1	1.7	1.1	0.1	0.3	0.1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84.2	14.3	1.5	4.3	0.8	0.2	0.0	1.4	0.0
비금속광물 제품	80.3	10.3	9.4	4.2	0.8	0.7	0.0	2.9	0.5
제1차 금속산업	62.0	33.0	5.0	7.8	2.0	0.2	0.0	0.2	0.0
조립금속 제품	67.6	29.4	3.0	6.5	1.3	0.2	0.0	1.3	0.1
기타 기계 및 장비	81.4	13.7	4.9	4.5	2.0	0.3	0.0	0.1	0.1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77.3	21.0	1.7	6.1	0.8	0.0	0.0	0.3	0.0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79.0	18.6	2.4	5.6	1.4	0.1	0.1	0.4	0.1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81.6	15.6	2.8	6.1	1.6	0.0	0.0	0.1	0.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84.5	15.5	0.0	4.1	1.1	0.4	0.0	0.1	0.0
자동차 및 트레일러	64.8	30.9	4.3	3.4	1.7	0.5	0.0	0.0	0.1
기타 운송장비	85.1	14.0	0.9	2.6	1.6	0.3	0.0	0.4	0.1
가구 및 기타	92.7	7.1	0.2	3.5	0.8	0.9	0.1	0.2	0.1
제조업	78.0	19.4	2.6	4.9	1.3	0.3	0.0	0.5	0.1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997)

이외에 수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중 어느 정도를 위탁기업에 납품하는가를 나타내는 전업성의 정도를 살펴보면 <표7>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전체적으로 주거래 위탁기업에 대한 수탁기업의 납품의존도는 1996년 현재 50%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에 있다.¹²⁾ 전체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의존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납품의존도가 80% 이상인 수탁기업의 비중은 77.7%에 이르고 있다. 납품의존도가 80%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납품의존도를 세분화해서 보면 상당부분 95% 이상을 납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소기업체의 전업성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납품의존도가 60% 이상 ~ 80% 미만인 경우는 11.8%로서 생산된 제품의 상당부분을 도급거래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2) 납품의존도 분포와 관련하여 최동규·김광희(1994)는 전체 위탁기업과 주거래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액 자료를 이용해 수급 중소기업의 29.4%가 전속적(전체 매출 대비 주거래 위탁기업 납품 75% 이상) 거래를 21.1%가 준전속적(전체 매출 대비 주거래 위탁기업 납품 50-75% 미만) 거래를 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표7> 산업별 납품 의존도 현황(1996년)

구 분	주거래 위탁기업 ¹⁾ 의존도	전체 위탁기업 납품 의존도 분포 ²⁾			
		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 이상
음식료품	43.7	23.0	11.1	9.8	56.1(84.5)
섬유제품	44.1	5.2	5.7	13.2	75.9(93.3)
의복 및 모피제품	57.3	5.1	7.6	17.2	70.1(74.0)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40.0	12.5	1.9	7.0	78.6(60.7)
목재 및 나무제품	37.4	2.7	4.7	8.5	84.1(86.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43.4	1.3	3.6	5.0	90.1(82.7)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56.1	1.9	2.9	8.8	86.4(82.8)
화합물 및 화학 제품	35.8	12.9	4.6	7.3	75.2(85.8)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43.1	6.1	16.8	12.9	64.2(82.7)
비금속광물 제품	39.5	11.0	4.9	10.7	73.4(93.2)
제1차 금속산업	35.9	9.1	2.5	3.1	85.3(92.7)
조립금속 제품	43.4	7.5	1.0	6.5	85.0(93.3)
기타 기계 및 장비	47.8	2.7	5.4	9.4	82.5(84.5)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39.1	3.6	18.3	17.4	60.7(92.4)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50.0	1.7	4.5	20.4	73.4(82.7)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53.9	3.5	0.5	17.1	78.9(84.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53.8	3.2	3.7	3.3	89.8(81.8)
자동차 및 트레일러	50.4	5.1	6.3	12.5	76.1(93.8)
기타 운송장비	57.3	0.6	3.2	3.5	92.7(75.0)
가구 및 기타	43.1	3.8	3.1	25.9	67.2(78.9)
제조업	46.3	5.4	5.1	11.8	77.7(85.1)

주 : 1) 매출액 대비 납품액

2) 해당범위내 중소기업수 비중

3) ()는 납품의존도 80% 이상중 납품의존도가 95% 이상인 경우의 중소기업 수 비중임.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997)

(2) 수·위탁기업간 불공정거래와 협력 현황

분업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에는 상대적으로 협상력의 우위에 있는 위탁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수탁기업에 대한 단가인하 압력, 대금지연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수·위탁기업간에는 불공정거래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각종 지원을 통해 분업생산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도 나타나고 있다. 이하에서는 위탁기업의 수탁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와 지원 내용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표8>은 수탁기업에 대한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995년부터 매년 불공정 하도급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법적용 대상범위를 확대시킴과 아울러 상습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데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공정거래행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연구원의 지적과 같이

단가인하 압력, 입찰경쟁시의 인맥을 통한 낙하산식 업체결정 등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효율화를 달성하는 데 여러 형태의 제약이 있음을 볼 수 있다.¹³⁾

<표11> 불공정 도급거래의 유형별 현황 및 추이
(단위 : 건)

연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계
대금미지급	11 (69)	18 (96)	41 (108)	22 (110)	35 (167)	63 (262)	62 (292)	252 (1,104)
대금지연지급	18 (65)	8 (36)	0 (6)	1 (3)	0 (1)	0 (1)	1 (4)	28 (116)
어음할인료미지급	70 (145)	18 (61)	16 (35)	16 (65)	54 (120)	49 (163)	82 (169)	305 (758)
서면미교부	21 (66)	12 (35)	29 (49)	5 (23)	27 (72)	3 (17)	3 (7)	100 (269)
부당감액	1 (2)	5 (6)	0 (1)	1 (1)	1 (1)	0 (1)	6 (10)	14 (22)
선급금미지급	3 (47)	0 (5)	0 (0)	0 (1)	1 (1)	0 (7)	0 (3)	4 (64)
수령거부	7 (7)	6 (8)	3 (3)	1 (1)	2 (3)	3 (4)	2 (2)	24 (28)
기타	57 (59)	35 (65)	10 (16)	5 (20)	12 (22)	27 (39)	11 (47)	157 (268)
계	188 (460)	102 (312)	99 (218)	51 (224)	132 (387)	145 (494)	167 (534)	884 (2,629)

주 : ()는 건설업 포함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1998)

위탁기업으로 인해 수탁기업이 경험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좀더 논의해보면 수탁기업들은 도급거래시 <표9>와 같은 애로사항을 겪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탁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납품단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수시발주 및 대금결제의 장기화가 그 다음의 애로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납품단가의 문제는 위탁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비와 관련된 문제로서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위탁기업들은 납품단가를 낮추려는 동기를 갖기 마련이다. 그러나 납품단가는 수탁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매출과 직결된 문제로서 매출의 대부분을 위탁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전업형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일수록 납품단가 인하로 인한 어려움은 더욱 커지게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수탁중소제조업체의 전업성은 매우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납품

13) 중소기업인이 보는 불공정 유형과 사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경제연구원(1998)을 참고할 수 있다.

단가가 낮은 데 따른 어려움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수시발주의 문제는 발주의 불규칙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데 따라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위탁기업의 입장에서 발주의 불규칙성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 수시발주의 문제는 납품단가의 문제와 달리 도급거래 양당사자의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해 해결되는 문제라기 보다는 도급거래의 지속성이 유지하기 위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제품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대금결제의 장기화 문제는 경기여건에도 좌우되는 것이지만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대금결제의 장기화에 따라 수탁기업이 부도를 맞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표9> 수탁기업의 도급거래상 애로사항

구 분	(%)		
	1994	1995	1996
지나친 품질수준요구	28.9	30.8	32.0
인수증교부일 장기화	3.1	6.7	7.0
저렴한 납품단가	73.1	75.4	68.4
대금결제일 장기화	47.8	40.7	44.9
수시 발주	40.0	44.5	48.3
납기단축 촉박	34.4	35.0	34.2
거래선 변경가능성	27.5	23.1	26.2
기타	0.8	2.8	4.2

주 : 복수응답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994, 1995, 1997)

한편 수탁기업에 대한 위탁기업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1996년 현재 원자재 공급이 1순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10> 참고]. 그 다음으로는 기술지도, 설계제공, 설비대여, 경영지도, 자금지원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지원방식의 차이는 시기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주로 원자재공급, 기술지도, 설계제공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지원은 낮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분업생산 체제의 발전단계로 볼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탁기업의 저렴한 생산비와 생산설비를 활용하고자 하는 도급거래보다는 전문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도급거래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수급기업에 대한 위탁기업의 지원이 미흡하다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을 생산성 향상 및 기술

혁신을 통해 공동으로 발전하는 동반자로 보기보다는 단가인하 등을 통해 단순히 부품조달 비용을 통해 줄이려는 거래상대자로 보려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자금지원이 저조한 것은 수·위탁기업간에 긴밀한 협력체제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도급거래를 자체만을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짐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는 발전단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어 높은 단계에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수급중소기업의 자금가용성을 높여줄 수 있는 연계보증지원과 관련하여 응답기업의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한계도 있지만 추천할만한 수탁기업이 없어서 보증지원을 하지 못했다는 실태조사도 있다[백락기(1994), p. 47]. 따라서 위탁기업에게만 협력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것 같다.

<표10> 수탁기업에 대한 위탁기업의 지원내용 (%)

구 분	1994	1995	1996
기술지도	47.0	43.7	44.1
경영지도	10.9	15.7	16.9
자금지원	12.3	13.4	14.8
융자보증	5.1	8.7	7.2
원자재 공급	53.4	53.8	47.9
설비대여	10.7	12.8	19.4
제품설계제공	37.3	40.7	33.4
자본참여	4.5	1.9	2.1
인력파견	4.2	5.0	4.2
부품공동개발	-	10.0	11.0

주 : 복수응답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994, 1995, 1997)

다음으로 수·위탁 분업체제의 효율화의 주요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수·위탁 기업간 기술협력 현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표11>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의 기술개발방식중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은 자체개발방식(49.3%)이다. 그 다음으로는 기술모방에 의해 기술을 개발하는 방식(34.4%)이 선호되고 있으며, 분업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위탁기업과의 공동개발은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의 기술개발방식은 일본의 경우와 매우 대조적이다. 1984년 일본의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하청기업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의 53.3%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모기업을 주요 기술도입 거래선이라고

답변했다[조철(1992), p. 47]. 한편 앞으로의 기술개발계획에 대해 모방기술방식을 채택하겠다는 비율이 매우 낮아진 대신 기술도입 내지 공동연구를 하겠다는 기업의 비율이 증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탁기업과의 공동연구를 계획하는 기업의 비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분업생산 체제의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수·위탁기업간 기술협력 여건의 조성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11> 중소기업체의 기술개발방식

개발방식	%					
	중기업		소기업		전체	
	현황	계획	현황	계획	현황	계획
자체개발	45.8	55.7	63.9	57.0	49.3	56.1
국내외 기술모방	35.2	7.4	31.0	7.5	34.4	7.5
외국기술 도입	3.7	7.9	3.3	18.8	3.6	9.9
대기업에서 도입	1.0	4.4	0.0	0.0	0.8	3.6
타기업과의 공동연구	1.6	3.1	0.0	13.0	1.3	4.8
모기업과의 공동연구	5.6	5.3	0.0	0.0	4.6	4.3
대학 연구기관에 위탁	5.7	9.4	1.8	1.8	4.9	8.0
기타	1.4	6.8	0.0	1.9	1.1	5.8

주 : 1991년 기술개발 활동업체 기준
 자료 : 백락기(1994)

기업규모별로 보았을 때 기술개발 방식의 우선 순위에 커다란 차이는 없다. 소기업 및 중기업 모두에 있어서 우선 순위가 자체개발 방식과 기술모방 방식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비중도 상당히 높다. 다만 소기업의 경우 자체개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중기업의 경우 저조하나마 위탁기업과 공동연구를 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소기업의 경우는 위탁기업과의 공동개발이 전혀 없는 점도 주목된다. 물론 소기업의 경우 위탁기업과의 공동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은 위탁기업이 기술력이 낮은 중기업일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소기업의 경우 해외로부터의 기술도입 및 타기업과의 공동연구방식을 통해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크게 의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반면 위탁기업과 공동연구 계획은 여전히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기업의 경우에도 기술모방 방식을 크게 줄이는 대신 기술도입 및 타기업과의 공동연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위탁기업과의 공동연구 방식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기업규모별로 세분화해보더라도 수·위탁기업간 기술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여건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된다.

2. 지정계열화 정책의 추이와 현황

(1) 정책 추진과정

우리나라에 있어 수·위탁기업간 분업체제의 확산은 정부의 지정계열화업종 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이하에서는 정부의 지정계열화업종제도를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추진 과정 및 관련 법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¹⁴⁾

수·위탁 분업체제와 관련된 법률은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의 제정으로 계열화의 조성 및 수·위탁 거래관계의 적정화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면서 구축되었지만, 1975년중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이하 계열화촉진법)」이 제정되면서 강력한 계열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1977년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사업부터 정부가 종전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관계를 상호보완 및 지원관계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됨에 따른 것이다[어윤배(1995), p. 27]. 그후 1978년에 「계열화촉진법」이 개정(1차)되면서 적용대상이 제조업자, 가공업자에서 판매업자, 수리업자까지 확대되고 준수사항이 강화되었다. 1982년의 법개정(2차)에서는 납품대금중 인건비 부분의 현금지급 조항 포함, 계열화촉진협의회 및 수탁기업체협의회 구성의 제도화 등이 이루어졌다. 1990년 3차 개정이 있었으나 내용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1995년 7월중 중소기업관련법 통합과정중 계열화 정책의 내용이 일부 수정되고 계열화촉진법이 폐지되면서, 관련내용이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협력증진법)」로 통합조정 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과 병행하여 1992년부터는 계열화예시제가 시행되었다. 계열화예시제는 수입중인 핵심부품을 계열화 예시품목으로 선정하여 국산개발 단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해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도록 하며, 개발이 완료된 품목은 중소기업 지정계열화 업종 및 품목으로 고시하는 것을 주

14) 어윤배(1995)는 계열화품목지정제도를 하도급거래의 공정화 시책과 더불어 중소기업육성책인 보호정책, 적응정책, 불리보정정책중 불리조정정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와 관련법률에 대해서는 원본을 참고하기 바란다.

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백락기(1994), P. 65].

한편 1984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제정되었다. 협력증진법이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인 반면 하도급법은 수·위탁기업간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다.

(2) 관련 법제 현황

계열화 정책은 1995년중 「계열화촉진법」을 폐지하고 관련내용을 통합조정된 「협력증진법」과 1984년의 「하도급법」에 의해 법적 뒷받침을 받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법제의 주요 내용을 검토해보기로 하자.

계열화정책과 관련하여 협력증진법은 목적(제1조) 및 계열화 개념(제2조 제3항)을 비롯하여 계열화 촉진을 위한 지정계열화업종 및 품목지정(제12조),¹⁵⁾ 장기계약(제13조), 기술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의 지원(제14조), 공동연구(제15조), 중소기업계열화촉진협의회 설치(제16조), 위탁기업체협의회 구성(제17조), 정부의 금융 및 세제지원(제18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¹⁷⁾

그리고 수·위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위탁기업으로 하여금 약정서 교부(제19조), 납품대금 지급시기 및 지연이자 지급(제20조), 물품검사의 합리화(제21조), 물품 등의 수령거부 및 감액, 대금 미지급, 단가인하 금지 등(제23조 제1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위탁기업체가 제13조, 제19조 내지 제21조 또는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후술하게 될 「하도급법」내의 수·위탁거래 관련 금지행위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중소기업청장은 공정거

15) 협력증진법에 제1조에 따르면 협력증진법은 중소기업자의 사업활동 기회를 적정하게 확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기업간 협력을 증대시켜 분업에 의한 상호이익을 증진하고 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협력이란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제조·가공·수리·판매업자가 물품·부품·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이하 제조)를 중소기업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가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계열화를 통해 상호분업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16) 협력증진법 제12조에 따르면 위탁의존도가 큰 업종으로서 위탁기업체의 진흥,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특히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을 계열화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정계열화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위탁기업은 지정계열화품목의 제조를 위탁기업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정계열화업종 및 품목지정 당시 해당 지정계열화 품목을 생산하던 중소기업자가 대기업자가 된 경우로서 동일제품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와 기술 또는 품질수준이 현저히 낮아 완제품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계열화촉진협의회가 인정하고 중소기업청장인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시행령 제14조].

17) 위탁기업체협의회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부록1>을 참고할 수 있다.

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협력 증진법 제24조]. 반면 수탁기업의 이행과제로서 품질개선 및 납기준수 등(제22조)을 비롯하여 부당한 단가인상 요구 및 거래질서 문란행위 금지(제23조 제2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하도급법」은 수·위탁거래 관계를 하도급거래 관계로 명시하고 있고 수·위탁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법 제1조 및 제2조].¹⁸⁾ 「하도급법」의 구조를 보면 위탁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제3조), 발주자로부터의 받은 선급금의 지급 처리 방법(제6조), 수출물품 제조위탁시의 내국신용장 개설시기(제7조),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시기(제9조), 하도급대금 지급시기(제13조), 관세환급액의 지급시기(제15조),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시기와 대금변경에 따른 이자 및 할인을 적용기준(제16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금지규정으로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제4조), 물품 및 장비 등의 구매강제 금지(제5조), 위탁의 임의 취소 또는 변경 및 납품수령 거부금지(제8조), 목적물의 부당반품 금지(제10조), 부당감액 금지(제11조), 원사업자로부터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 등의 구매대금에 대한 부당결제청구의 금지(제12조), 부당한 대금변제의 금지(제17조), 하도급거래량 조절을 통한 수탁사업자에의 경영간섭 금지(제18조), 수탁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의 금지(제19조), 우회적 방법에 의한 하도급법 면탈행위의 금지(제20조) 등이 마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수탁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위탁내용의 성실히 이행, 원사업자의 범위반 행위에 대한 협조금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제3조, 제4조 내지 제13조의2, 제15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범위반 행위의 중지,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25조].¹⁹⁾ 그리고 제3조, 제4조 내지 제13조의2, 제15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여하고 있다[법

18) 「하도급법」 제2조는 하도급거래를 원사업자가 수탁사업자에게 가공위탁을 포함한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이하 제조 등의 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것을 수탁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고, 위탁받은 수탁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을 제조 또는 수리하거나 시공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이하 납품)하고 대가(이하 하도급대금)를 수령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19) 법 제13조의2는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에 대해 규정한 조항으로 건설위탁의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제25조의3].

(3) 계열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협력증진법」에 장기위탁 계약의 체결, 공동 연구개발,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 등 기업간 협력강화 및 계열화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대해서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법 제18조]. 특히 계열화에만 적용되는 세제상 지원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이하 조감법)」 제 26조 제4호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한 특정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계열화 품목으로 지정되면 「조감법」 제111조 제12호에 따라 「협력증진법」에 의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에 작성하는 지정계열화품목의 제조의 위탁에 관한 계약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수탁기업체협의회의 회원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 및 기술지도 등에 대한 요청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표12> 계열화 촉진을 위한 자금 및 세제지원

구 분	지원대상 및 우대내용	지원내용
중소기업 자동화 사업자금	<p>[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화 설비에 의한 제작, 도입시설 - 자동화라인의 구성요소인 시설 - 기존설비에 자동화 설비를 추가하는 시설 - 자동화 설비자금의 10% 이내에서의 설계비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 등 <p>[우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업협의회 회원 또는 위탁기업이 연대보증하는 기업은 우대지원 - 지원대상 선정시 가점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금리 : 연 7.0%(외화자금은 LIBOR + 2.0% 이내) - 대출기간 : 8년 이내(3년 거치기간 포함) - 대출한도 : 소요자금의 100% 이내(연간 30억 이내)
금융지원 신용보증	<p>[보증종류 및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 지급, 납세, 회사채, 어음, 시설대여 보증 - 지원대상 : 개인 및 법인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p>[우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대대상 : 위탁기업으로부터 추천받은 중소기업 - 추천 위탁기업의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한 위탁기업(대기업) · 신용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위탁기업 - 우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한도 우대 : 직전년도 매출액의 1/3(일반기업은 1/4) · 연대보증인 입보면제 · 보증심사시 가점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한도 : 15억원 - 보증율 : 연 1.0%
지방 중소기업 육성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화사업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시설의 자동화 또는 시설근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거나, 모기업이 연대보증하는 기업은 우선 지원 - 사업이양 관련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사업이양을 한 위탁기업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은 우선 지원 - 계열화 촉진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계열화품목의 생산비율이 50% 이상인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지정계열화업종 영위 위탁기업이 추천한 중소기업은 우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금리 : 연 7% 이하 - 대출기간 : 시설자금은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은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조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 및 연구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조감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23조] - 지정계열화품목 제조위탁 계약에 대한 인지세 면제[조감법 제111조 제12호]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기술지도 우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업체협의회 회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원 요청시 우선 실시 - 창업시 조세감면 및 절차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계열화품목 생산을 목적으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기술집약형으로 분류하여 조세감면 및 창업절차 간소화 - 아파트형공장 입주 우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입주 사정시 수탁기업체협의회 회원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및 입주자금 지원 - 외국인산업연수생 배정시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생 배정시 수탁기업체협의회 회원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적용 - 상업어음할인시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업체협의회 회원에 대한 금리우대 	

자료 : 중소기업계열화촉진협의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996)

IV.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 결정요인과 산업성과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의 현황 및 정부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와 같은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는 어떤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분업생산 체제가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주었는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가 확산되어 온 배경으로는 정부의 지정계열화제도가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지정계열화 품목이 감소되는 가운데도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가 확산되어 왔음은 경제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하에서 이러한 점에 대해 논의해보고,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1. 분석모형 및 자료의 설정

(1) 분석모형의 구축

1) 분업생산 체제 결정요인 분석모형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의 생성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는 수직통합 체제와 차이를 갖지만 계약 관점에서 보면 수직통합 체제에 가까운 생산체제로서 준통합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거래비용론 관점에 있는 Monteverde and Teece(1982)에 따르면 준통합의 가능여부에 따라 실물자산의 전속성이 수직통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실물자산의 전속성으로 인한 기회주의적 행동이 준통합을 통해 제어될 수 있다면 수직통합을 통하지 않고 거래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며, 수직통합으로 인한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비용 문제를 준통합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면 불확실성은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의 확산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가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의 확산으로 불

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수직통합을 통해 거래비용을 줄이려는 동기가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밖에 준통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자산의 특정성과 관련된 것이라면 불확실성은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한편 수·위탁생산 분업체제의 확산 여부는 경기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하청론과 같이 대체로 도급거래의 수탈문제를 강조하는 시각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경기변동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급거래가 이용된다는 것이다. 즉, 경기변동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수요변동이 심한 산업의 경우 불안정적인 수요부분은 외주를 통해 조달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경기가 상승하는 기간에는 외주가 확산되고 경기가 하강하는 기간에는 외주가 축소된다.

본장에서는 거래비용론 관점 이외에 이러한 시각을 고려하여 경제여건과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 형성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 모형을 식 (1)과 같이 구성하고자 한다.

[가설1] 준통합을 통해 거래비용을 줄이려는 동기가 작용한다면 수요변동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는 확대된다.

[가설2] 경기 상승기에는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가 확대되고 경기 하강기에는 축소된다.

$$\text{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 F(\text{불확실성, 경기여건, 통제변수}) \quad (1)$$

분석모형 식 (1)은 제설명변수들이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의 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회귀모형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업생산의 유형은 도급거래를 통해 수탁기업과 위탁기업간에 분업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외에도 시장교환을 통해 소재 및 부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내 거래, 그리고 모든 생산이 하나의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수직통합의 형태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하에서도 거래가 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거래선이 다변화 되어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²⁰⁾ 따라서 [가설1], [가설2] 이외에 실증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에 대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²¹⁾

[가설3]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준통합 분업생산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동기가 작용하여 전속적 거래를 형성하게 된다.

설명변수로는 경제여건을 나타내는 불확실성 및 경기 이외에도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투자의 특정성, 자본구조, 노동여건, 계열화 정책변수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투자의 특정성은 거래비용론 관점을 자본구조 및 노동여건은 하청제 관점을 반영한다. 또한 지정계열화정책이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의 형성에 미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계열화 정책변수를 설정하였다.

거래비용론 관점을 반영하는 투자의 특정성과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거래비용론에 따르면 투자의 특정성이 높은 경우, 즉 거래특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거래비용의 절감하려는 동기가 작용하게 된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Monteverde and Teece(1982)의 경우는 미국 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 준지대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용변수로서 자산의 특정성 정도에 치구·금형과 같은 특정설비 비용을 곱한 값과 준통합 여부간의 분석을 통해 기회주의를 억제하고자 준통합이 선택됨을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동기가 작용을 한다면 준통합적 성격을 갖는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의 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자본구조는 자본절감의 필요성이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 형성에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통제변수이다.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자본의 안정성이 떨어질수록 도산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본절감을 위해서 내제를 줄이고 외주를 확산시킴으로써 자본절감의 필요성과 수·위탁 분업생산

20) 수탁기업의 거래선 다변화는 위탁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수탁기업의 공유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수탁기업의 공유화는 위탁기업이 복수의 수탁기업에게 생산을 위탁하는 외주업체 다변화와는 다르다.

21) [가설3]의 검증모형은 다음과 같다.

$$\text{전속적 거래} = F(\text{불확실성}, \text{경기여건}, \text{투자의 특정성}, \text{계열화 정책})$$

체제의 확산간에는 정(+)¹의 관계를 보이게 된다.

수탁기업과 위탁기업간의 노동여건을 나타내기 위해 설정된 변수, 즉 임금격차는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의 확산간에는 정(+)¹의 관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주를 통해 수탁기업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동기가 작용한다면 수·위탁기업간 임금격차가 클수록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을 구축하려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병휴·윤창호(1986)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너무 낮은 경우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노동비용이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적이 타당성을 갖는다면 임금격차는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형성을 유인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의 형성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정계열화정책은 특정 품목에 대해 신규로 생산하는 경우 동품목에 대해서는 수탁기업에게 제조를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를 인위적으로 구축해온 측면도 크다.

2) 분업생산 체제의 산업성과 분석모형

우리나라에 있어서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가 확산되는 방향으로 분업생산 체제가 발전해왔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러한 발전과정은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¹의 효과를 가져다 주는 생산방식이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의 확산이 가져다 준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가. 이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분업생산 체제의 경제적 효율성 문제에 대해 논의해보기로 한다. 그리고 가설은 식 (2)와 같은 회귀분석 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4]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체제의 확산이 산업의 생산구조를 효율화 시키는 과정이었다면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의 확산은 산업성과에 정(+)¹의 효과를 주었을 것이다.

분석모형 식 (2)의 종속변수인 산업성과는 생산성과 수익성 그리고 성장성 지표로 측정하고자 한다. 생산성 지표는 수익성이나 성장성 지표와 달리 해당 산업의

효율성 정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생산단계에서의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의 효율성 정도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text{산업성과} = G(\text{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전속적 거래, 통제변수}) \quad (2)$$

설명변수는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를 비롯하여 산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타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주요 설명변수로서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하에서 전속적 거래에 관한 변수를 추가하여 수탁기업의 납품선다변화, 즉 도급거래의 개방화가 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수·위탁기업간에 도급거래의 개방화가 이루어진다면 수탁기업에 대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게 된다. 또한 도급거래의 개방화는 소재·부품의 공유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재·부품공유를 통한 위탁기업의 생산성 향상 내지 비용절감 효과도 가져다 줌으로써 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탁기업의 거래선 다변화가 진전될수록 수·위탁기업간에 정보가 활발히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역으로 전속적 거래의 경우에도 수·위탁기업에 대해 협력강화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통제변수로는 도급구조의 중층화 정도, 투자의 특정성, 수요의 성장률, 노동장비율, 도급품목 유형, 수탁기업의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의존도, 계열화 정책변수 등을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들은 산업성과에 따라 분석모형을 달리하여 실증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도급구조의 중층화 변수는 도급거래 구조의 중층화 정도가 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도급거래가 중층화가 진행될수록 1차 수탁기업은 소수화·대형화된다는 점에서 1차 수탁기업의 기술개발능력이 배양될 수 있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유승민 외(1994), pp. 213-215]. 이외에 도급구조의 중층화를 통해 각 생산단계가 세분화됨으로써 분업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반면 도급거래의 중층화가 심화될수록 수·위탁기업간의 거래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생산에 대한 위계적 통제 단계에 관심을 둔 Williamson(1967)에 따르면 위계단계가 많아질수록 이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Williamson의 논의는 준통합적 구조하에서 일종의 위계적 통제

를 받게 되는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하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도급거래가 중층화 될수록 위계적 통제단계가 많아지게 되므로 각 도급단계에서 통제의 손실정도가 많아지게 되고 감시비용이 더 들게 되는 경우에 수익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동 변수의 설정을 통해 기술개발능력 내지 규모의 경제, 분업효과 또는 거래비용이 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고자 한다.

투자의 특정성은 거래특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투자된 설비가 특정한 용도를 위해 사용되어지거나 또는 제품의 차별화를 유발함으로써 산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수요성장률은 수요요인이 산업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 노동장비율은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서 노동의 효율에 영향을 줌으로써 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통제한다.

도급품목의 유형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생산·납품하는 생산품목의 유형이 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수탁기업이 생산·납품하는 품목유형은 전문화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서 단일부품(parts) 위주의 생산·납품과 단위부품(units) 내지 완제품 위주의 생산·납품 생산방식이 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수 있다.²²⁾

수탁기업의 전업성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주거래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의존도도 산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거래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의존도가 높을수록 수·위탁기업간에는 상호의존성이 강해지면서 기술협력 및 거래비용의 절감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외에도 생산성은 수익성과 같은 산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므로 통제변수로 설정하기로 한다. 또한 생산성은 산업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성장성 분석모형내에서 통제변수로 설정하고자 한다.

한편 지정계열화 정책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특정품목을 수·위탁 분업생산을 통해 생산하도록 한 정부의 개입이 산업의 성과에 미칠 수 있는 부분을 통제하고자 한다. 지정계열화 정책이 수·위탁 분업생산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산업성과에는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2) 단일부품은 그 자체로는 독자적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단품으로 볼트, 너트, 인쇄회로기판 등이고 단위부품은 몇 개의 단일부품이 결합·가공되어 독자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복합부품인 엔진, 모터, 스피커, 헤드폰 등을 의미한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997), p. 22].

(2) 추정방법 및 자료

본 연구에서 추정하게 될 회귀분석 모형을 일반화 시켜보면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하첨자 i , t 는 실증분석에 이용될 자료가 각각 횡단면자료와 시계열자료로 구성된 패널자료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Y 는 종속변수, β_0 는 상수항, α_i 는 i 번째 산업에 특정한 관찰되지 않은 요인의 효과(individual effects)를, λ_t 는 시간에 특정한 관찰되지 않은 요인의 효과(time effects)를, X 는 설명변수, e_{it} 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Y_{it} = \beta_0 + \alpha_i + \lambda_t + X_{it} \cdot \beta + e_{it} \quad (3)$$

분석모형의 추정은 분석에서 이용될 패널자료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fixed effects model 분석법에 의해 추정하기로 한다.²³⁾ fixed effects model은 관찰되지 않은 산업 및 시간 특정한 요인들을 고정된 상수(fixed constant), 즉 더미(dummy) 변수로 처리함으로써 패널자료 분석시의 편의(bias) 발생 문제를 제거할 수 있다[Hsiao(1989), pp. 25-49].

본 연구에서 이용된 자료는 1990년부터 1996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산업별 자료이다. 산업분류는 분석모형을 구성하는 체변수의 계측과정에서 자료의 접근이 가능한 중분류 산업단위로 구분하였다.²⁴⁾ 중분류 산업단위의 분석은 거래단위 내지 기업단위로 이루어지는 수·위탁기업간의 거래관계를 분석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수·위탁기업간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과 이러한 요인에 영향을 받은 거래관계 형성에 관한 거래단위 내지 기업단위의 정보들이 산업단위의 자료에 반영되어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서 분석결과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3) fixed effects model 분석법 이외에도 random effects model 분석법에 의해 분석모형을 추정한 후, 양자중 Hausman 검정을 통해 적합모형을 선정할 수 있다. 그러나 모형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random effects model 분석법을 이용했을 때 오차항을 구성하는 분산추정량이 부(-)의 값을 갖는 경우가 발생하여 분산추정량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fixed effects model 분석법을 따르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Judge et al.(1982), pp. 493-496을 참고할 수 있다.

24) 산업분류는 17개의 중분류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2>를 참고할 수 있다.

<표13>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주요 변수		산정방법
식	(1)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SC) 전속적 거래 여부(NC) 불확실성(UC) 경기여건(IP) 투자의 특정성(ASR) 자본구조(DR) 노동여건(WD) 계열화 정책(GP)	수·위탁거래 관련 중소기업수/전체 중소기업수 수탁 중소기업이 거래하는 위탁기업수의 평균 매출과 시간간 회귀분석 결과의 오차항 분산 추세치를 제거한 산업생산지수 광고선전비/매출 부채/자기자본 대기업 임금수준/중소기업 임금수준 해당산업내 계열화 품목수/제조업내 계열화 품목수
	(2) 생산성(PRL) 수익성(PFT) 성장성(GRO)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SC) 전속적 거래 여부(NC) 도급구조의 중층화(FC) 투자의 특정성(ASR) 도급품목 유형(ST) 노동장비율(EL) 납품의존도(MSU) 계열화 정책(GP)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 경상이윤/총자본 (t기 매출액 / t-1기 매출액) - 1 수·위탁거래 관련 중소기업수/전체 중소기업수 수탁 중소기업이 거래하는 위탁기업수의 평균 1-(1차 수탁 중소기업수/전체 수탁 중소기업수) 광고선전비/매출 단일부품 납품액/전체 납품액 유형고정자산/종업원수 매출액 대비 주거래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액 해당산업내 계열화 품목수/제조업내 계열화 품목수

주 : 모든 자료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중분류 산업단위에서 계산됨.

분석모형 식 (1)에 대한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는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종속변수로 설정된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SC) 변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중소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이용하여 전체 중소기업 가운데 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하 도급거래율)으로 측정하였다. 전속적 거래 여부(NC)는 동 자료로부터 수탁기업이 거래하는 위탁기업수의 평균치로 나타내었다.

설명변수인 불확실성(UC)은 한국산업은행의 『재무분석』상의 산업별 매출액을 시간에 대해 회귀분석한 후 그 오차항의 분산으로 측정하였다. 추정된 회귀계수는 예상된(anticipated) 수요의 변화를 반영하는 반면 오차항의 분산은 예상하지 못한(unanticipated) 수요의 변화를 나타낸다[Levy(1985), p. 441]. 경기여건(IP)은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연보』상의 중분류 산업의 생산지수(원지수)에서 추세치를 제거한 지수를 사용하였다. 추세치는 Hodrick-Prescott 방법에 의해 제거하였다. 따라서 경기상승기에 추세치를 제거한 산업생산지수는 증가하는 반면 경기하강기에는 감소한다.

통제변수로 사용된 투자의 특정성(ASR) 지표는 한국산업은행의 『재무분석』상의 손익계산서내 광고선전비를 매출액으로 나누어 준 광고집약도를 사용하였

다. Levy(1985)에 따르면 제품의 차별화를 위해 표준화 되지 않은 부품이 사용됨으로써 거래특정적인(transaction-specific)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제품의 차별화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광고집약도는 거래특정적인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낸다. Titman and Wessels(1988)도 광고비는 거래비용에 영향을 주는 자산의 특정성을 측정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경우에 광고는 산업내에서 경쟁억제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그러나 투자의 특정성 정도를 광고집약도로 나타내는 경우 광고가 정보의 확산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내의 경쟁정도를 높이는 요인을 반영할 수도 있다.

자본구조(DR)는 한국산업은행의 『재무분석』상의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부채비율로 구하였다. 자료로부터 추출된 부채비율은 표본을 통해 구해진 것이라는 점에서 위탁기업의 자본구조를 나타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한 산업의 부채비율은 해당산업내 위탁기업의 안정성 정도를 가늠하는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동자료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수탁기업과 위탁기업간 노동여건(WD)을 나타내는 임금격차는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상의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의 종업원 1인당 연간급여액을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종업원 1인당 연간급여액으로 나누어 계측하였다. 그런데 내제와 외주를 결정하는 임금조건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의 임금차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수·위탁기업간 거래를 설명하는 노동여건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산업내의 대·중소기업의 평균적인 임금은 구성기업들의 임금설정 기준이자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수·위탁거래를 영향을 미치는 임금격차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노동여건 변수로 사용하였다.

계열화 정책변수(GP)는 제조업내에서 지정계열화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품목수중에서 해당 중분류 산업내에서의 지정계열화 품목이 차지하는 품목수 비중으로 나타내었다. 분석기간중 지정계열화 품목이 변화된 1995년에 대해서는 새롭게 설정된 지정계열화 품목을 적용하였다.

한편 분석모형 식 (2)의 종속변수로 설정된 생산성(PRL) 지표는 한국산업은행 『재무분석』상의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으로 사용하였다. 노동생산성은 노동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경쟁력을 측정하는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수익성(PFT) 지표로는 동일 자료로부터 추출된 총자본경상이윤율을 사용하였다. 총자본경상이윤율은 총자본 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성장성(GRO) 지표는 해당산업의 매출액 증가율로 계측하였다.

식 (2)의 설명변수중 도급거래의 중층화 정도(FC)는 <표1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중소기업 실태조사 보고서』상의 전체 중소 수탁기업수에서 차지하는 1차 도급거래에 있는 중소 수탁기업수의 상대적인 비중으로 나타내었다. 1차 도급비중이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2차, 3차 도급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도급거래의 중층화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수요요인을 반영하는 수요성장률은 성장성 지표로 활용된 매출액성장률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노동장비율(EL)은 한국산업은행 『재무분석』에서 추출하였으며, 계측과정에서 건설가계정에 대한 자료접근이 불가능하여 유형고정자산만을 종업원수로 나누어 계측하였다.²⁵⁾

도급품목 유형(ST)의 차이는 『중소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조사된 위탁기업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생산·납품하는 품목이 단일부품인 경우의 납품액이 전체 납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내었다. 수탁기업의 주거래 위탁기업 납품 의존도(MSU)는 동일자료로부터 수탁기업의 매출액에서 주거래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내었다.

이상과 같은 자료로부터 본 연구가 분석하게 될 회귀모형을 구체화 해보면 다음과 같다. 식 (4)와 식 (5)는 각각 [가설1] 및 [가설2], [가설3]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이다. 그리고 산업성과 분석모형인 식 (6), 식 (7), 식 (8)은 각각 산업성과를 생산성, 수익성, 성장성으로 구분하여 [가설4]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이다. 각 분석 모형은 전산업을 대상으로 추정하고, 산업을 경공업과 중공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5) 노동장비율은 유형고정자산에서 건설가계정을 제한 후, 이를 종업원수로 나누어 계산된다. 그러나 『재무분석』 내에는 건설가계정에 대한 자료접근이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종업원수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자료접근이 가능한 부가가치율, 매출액, 노동생산성을 이용해 구하였다.

$$\begin{aligned} \text{종업원수} &= \text{부가가치}/\text{노동생산성} \\ &= (\text{부가가치율} \times \text{매출액})/\text{노동생산성} \end{aligned}$$

$$SC_{it} = F(UC_{it}, IP_{it}, ASR_{it}, DR_{it}, WD_{it}, GP_{it}) \quad (4)$$

$$NC_{it} = G(UC_{it}, IP_{it}, ASR_{it}, GP_{it}) \quad (5)$$

$$PRL_{it} = H(SC_{it}, NC_{it}, FC_{it}, ASR_{it}, GRO_{it}, EL_{it}, ST_{it}, MSU_{it}, GP_{it}) \quad (6)$$

$$PFT_{it} = I(SC_{it}, NC_{it}, FC_{it}, ASR_{it}, GRO_{it}, PRL_{it}) \quad (7)$$

$$GRO_{it} = J(SC_{it}, NC_{it}, FC_{it}, ASR_{it}, EL_{it}, PRL_{it}, GP_{it}) \quad (8)$$

2. 실증분석 결과

(1) 제변수의 기초통계 분석

모형의 추정에 앞서 제설명변수간의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 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 전체산업을 대상으로 한 식 (4)에 대한 제설명변수간 상관관계를 알아보면 <표14>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²⁶⁾ 상관분석 결과는 식 (4)를 구성하는 설명변수간에는 낮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상관분석과 병행하여 제설명변수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제설명변수(X)에 대한 $X'X$ 행렬식의 단위근(eigenvalue) 분석과 여타 설명변수에 대해 i 번째 설명변수를 회귀분석함으로써 얻어지는 결정계수(R_i^2)로부터 $1/(1-R_i^2)$ 의 값을 계산해보았다. 분석결과 단위근이 양수로 나타났고 $1/(1-R_i^2)$ 의 값도 1.294로서 판단 기준치는 10을 크게 하회하였다. 그리고 다중공선성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X'X$ 의 최대 단위근값 / i 번째 단위근 값)^{0.5}의 값도 판단기준치 30을 크게 하회하는 13.979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식 (4)는 모든 설명변수를 포함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식 (5)의 경우에도 이상의 상관분석 및 다중공선성 분석결과에 따라 모든 설명변수를 포함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표14> 제설명변수간 상관관계(I) : 전체산업 대상

	UC	ASR	IP	DR	WD	GP
UC	1.0000					
ASR	0.0624	1.0000				
IP	0.1791	-0.0026	1.0000			
DR	0.0166	0.2654	-0.0664	1.000		
WD	-0.0053	-0.0554	-0.1137	0.0258	1.0000	
GP	0.0234	-0.2712	-0.0083	0.0180	0.2864	1.0000

26) 산업을 경공업 및 중공업으로 분류한 경우의 상관분석 결과는 <부록3>을 참고할 수 있다.

한편 전체산업을 대상으로 한 식 (6), 식 (7), 식 (8)을 구성하는 제설명변수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표15>에 나타나 있다. 표에 따르면 위탁기업의 주거래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의존도(MSU)와 도급의 중층화 정도(FC) 변수간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다중공선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본 결과 이들 두변수는 여타 설명변수와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 (6)은 주거래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의존도와 도급의 중층화 정도를 나타내는 설명변수를 분리하여 분석모형을 추정하기로 한다. 또한 식 (7)과 식 (8)에 대해서는 제설명변수가 노동생산성(PRL)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수익성 및 성장성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요인과 제설명변수가 수익성 및 성장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구분하기 위하여 모형을 변형하여 추정하기로 한다.

<표15> 제설명변수간 상관관계(Ⅱ) : 전체산업 대상

	SC	NC	FC	ASR	GRO	EL	ST	PRL	MSU	GP
SC	1.0000									
NC	0.0705	1.0000								
FC	-0.1443	-0.4902	1.0000							
ASR	-0.2426	-0.0658	0.0720	1.0000						
GRO	0.2352	-0.0550	0.1805	-0.1865	1.0000					
EL	-0.2650	-0.0617	0.4547	-0.3001	0.1293	1.0000				
ST	0.2701	-0.0357	0.2439	-0.4171	0.1164	0.3503	1.0000			
PRL	0.0437	0.0855	0.3780	-0.1857	0.1715	0.5326	0.4736	1.0000		
MSU	-0.1444	-0.4919	0.9998	0.0777	0.1829	0.4506	0.2427	0.3773	1.0000	
GP	0.2923	-0.0268	0.0023	-0.2712	0.1067	0.0023	0.2828	0.3591	0.0028	1.0000

(2) 분석모형의 추정

1) 추정방법에 대한 분석

분석모형을 추정시 우선 관찰되지 않은 산업 및 시간에 특정적인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fixed effects model에 의한 분석모형의 추정과정에서 F-검정을 시도하였다. F-검정은 관찰되지 않은 산업 및 시간에 특정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통합 회귀를 통해 얻어진 RSS(residual sum of square)와 이들을 고려한 fixed effects model의 추정에서 얻어진 RSS로부터 식

(9)와 같은 F-통계량을 계산하여 실시하게 된다. 만약 F-통계량이 임계치보다 크면 관찰되지 않은 산업 및 시간에 특정적인 요인이 시간 및 산업간에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됨으로써 회귀분석시 산업 및 시간에 특정적인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F = [(RSS_P - RSS_F) / (DF_P - DF_F)] / [RSS_F / DF_F] \quad (9)$$

단, RSS_P 는 통합 회귀모형의 RSS
 RSS_F 는 fixed effects model의 RSS
 DF_P 는 통합 회귀모형의 자유도
 DF_F 는 fixed effects model의 자유도

<표16>은 전체산업을 대상으로 모형추정시 관찰되지 않은 산업 및 시간에 특정적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산업성과중 성장성 분석모형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석모형의 추정시 관찰되지 않은 산업 및 시간에 특정적인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성장성 분석모형은 통합회귀(pooled regression)를 통해 추정하고자 한다.

<표16> 관찰되지 않은 시간·산업 특정적 요인 고려 여부 검정 : 전체산업 대상

모형구분		RSS_P	DF_P	RSS_F	DF_F	F-통계량
SC		43130.4	112	12043.5	89	9.99***
NC		10903.2	114	4561.0	91	5.50***
PRL	모형T1	22554.6	110	2613.8	87	28.86***
	모형T2	22541.9	110	2567.4	87	29.43***
PFT	모형T3	387.4829	112	169.1360	89	5.00***
	모형T4	409.1927	113	204.7763	90	3.91***
GRO	모형T5	1354489	111	967354	88	1.53
	모형T6	1355942	112	995154	89	1.40

주 : 1)***는 99% 신뢰수준에서 유의적임을 나타냄.
 2)모형구분은 <표>를 참고

산업을 경공업 및 중공업으로 양분한 경우 관찰되지 않은 시간 및 산업 특정적인 요인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지를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부록4> 참고]. 경공업의 경우 수익성 분석을 위한 모형L4 분석모형과 성장성 분석모형 추정시 관찰되지 않은 시간 및 산업 특

정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대립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수익성 분석을 위한 모형L4의 경우 관찰되지 않은 산업 특정적 요인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²⁷⁾ 따라서 수익성 분석을 위한 모형L4에 대해서는 관찰되지 않은 산업 특정적 요인을 고려하고, 성장성 분석모형은 통합회귀를 통해 추정하고자 한다. 반면 중공업의 경우는 분석결과에 따라 성장분석 모형의 경우에만 통합회귀를 통해 추정하고 여타 분석모형은 관찰되지 않은 시간 및 산업 특정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2) 회귀분석 결과

㉠ 경제여건의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 형성 효과

<표17>은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 형성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식 (4)와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의 개방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식 (5)를 추정한 결과이다.

<표17> 경제여건의 수·위탁 분업생산체제 구축효과

구 분	UC	IP	ASR	DR	WD	GP	상수항	$\overline{R^2}$	
SC	전산업	8.268 (0.112)	0.121 (0.503)	6.106* (1.674)	-0.003 (0.227)	10.335** (2.417)	2.566** (2.152)	29.462** (2.482)	0.693
	경공업	21.769 (0.191)	0.020 (0.040)	0.082 (0.013)	0.014 (0.860)	25.163 (1.343)	-0.850 (0.094)	21.805 (0.723)	0.805
	중공업	22.891 (0.165)	0.166 (0.524)	5.593 (1.018)	-0.049 (1.570)	12.632** (2.479)	3.520** (2.428)	24.215 (1.343)	0.604
NC	전산업	-6.739 (0.151)	-0.306** (2.118)	3.001 (1.362)			0.159 (0.225)	11.122** (2.203)	0.500
	경공업	14.937 (0.330)	-0.218 (1.053)	-4.214 (1.530)			-0.210 (0.059)	18.213*** (4.682)	0.360
	중공업	20.351 (0.235)	-0.430** (2.084)	4.995 (1.373)			0.097 (0.112)	11.628 (1.219)	0.430

주 : ()는 t-통계량이며 *, **, ***는 각각 90%, 95%, 99% 신뢰수준에서 유의적임을 나타냄.

식 (4)를 추정한 결과를 보면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투자의 특정성,

27) $F_{(6,37)} = 2.587$ 로서 95% 신뢰수준에서 관찰되지 않은 산업 특정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임금격차, 지정계열화제도 등이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의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과 경기변동, 자본구조의 불안정성 등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투자의 특정성이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의 확산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는 거래특정적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 있을수록 준통합을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하려는 동기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거래단위를 기준으로 분석하지 않고 산업단위에서 분석한 결과라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하다.

임금격차를 이용하기 위해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의 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거래비용론 관점 이외에도 다양한 시각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저임금노동력 활용동기가 작용하고 있음은 홍장표(1993)의 연구와도 유사하다. 그는 1976-1990년중의 32(섬유·의복 및 가죽)산업 및 38(금속제품·기계 및 장비)산업을 대상으로 한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와 하청비율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양자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정계열화제도는 당초의 예상대로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의 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1984년을 정점으로 지정계열화 품목 및 업종수를 점차 줄여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정계열화제도에 의해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가 확대되어 가는 효과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변동이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못한다는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상이하다. 경기변동과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의 확대에 관한 연구에 대해 하현식(1990), 홍장표(1993) 연구는 다른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하현식 연구는 1976-1988년을 분석기간으로 한 중분류 산업단위의 분석을 통해 경기변동과 도급거래의 확대가 부(-)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예상과 달리 경기가 침체될수록 도급거래가 확산된다는 결과를 얻은 데에 대해, 그는 경기침체에 경비절감이 더 절실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홍장표 연구는 1973-1990년중의 32(섬유·의복 및 가죽) 및 38(조립금속제품·기계 및 장비)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단기적인 경기변동과 하청판매 변동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임으로써 경기변동의 조절판으로서의 하청의 역할을 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설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을 경공업과 중공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양 산업간에 차이가 있으며 전체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도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경공업의 경우 설정된 제설명변수로는 경공업 부문의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의 형성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반면 중공업의 경우는 임금격차와 지정계열화제도가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정계열화제도의 효과에 있어 산업간 차이가 있음은 지정계열화품목 및 업종이 중공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밖에 전체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달리 산업을 구분하는 경우에 투자의 특정성이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을 유도하는 효과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

식 (5)의 추정결과를 보면 수탁기업들의 거래선 다변화는 경기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가 침체될수록 수탁기업 거래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두가지 측면에서 그 배경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수탁기업이 자신의 협상력을 기반으로 위탁기업의 부도 및 경영악화로 인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거래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경기침체에 전속적 거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거래선 다변화를 용인한 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²⁸⁾ 물론 위탁기업의 용인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수탁기업의 거래선 다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서 수탁기업이 여타 위탁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협상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위의 협상력을 갖지 않는 한 위탁기업의 용인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선 다변화가 강행되는 경우 수탁기업들은 적지 않은 거래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탁기업의 거래선 다변화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위탁기업의 용인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수탁기업의 거래선 다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산업별로 보면 경기여건

28) 본 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실시한 주요 위탁대기업과의 면담결과에 의하면 IMF 체제 초기에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위탁기업들은 수탁기업들의 거래선 다변화를 용인·장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외주처의 확대 및 거래처간 경쟁유발 등을 통해 납기안정 내지 품질향상을 도모하거나 전속거래시 수탁기업의 물량확보 및 수익개선을 보장할 수 없는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수탁기업의 거래선 다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공업의 경우 경기여건이 수탁기업의 거래선 다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경공업의 경우는 주어진 설명변수로는 수탁기업의 거래선 다변화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⑤ 분업생산 체제의 생산성 제고 효과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표18>과 같다.

전체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는 예상과 달리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 하에서 수탁기업이 거래하는 위탁기업의 수가 많아질수록 노동생산성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재·부품을 공유할 수 있는 준통합적 체제가 이루어질수록 다수의 위탁기업으로부터 정보를 습득하거나 수·위탁기업 간에 활발한 정보의 교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분석결과는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기업의 거래선 다변화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18> 수·위탁생산 분업체제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구분	SC	NC	FC	ASR	GRO	EL	ST	MSU	GP	상수항	$\overline{R^2}$
전산업	모형 T1 (0.376)	0.236*** (2.854)	0.130* (1.759)	2.100 (1.267)	-0.008 (1.535)	0.125*** (2.817)	0.201*** (3.007)		-1.902*** (3.425)	82.332** (2.607)	0.927
	모형 T2 (0.391)	0.234*** (2.852)		1.859 (1.135)	-0.010* (1.926)	0.159*** (3.463)	0.158** (2.327)	0.290** (2.177)	-1.854*** (3.372)	144.76*** (2.677)	0.928
경공업	모형 L1 (2.358)	-0.111 (0.970)	0.032 (0.659)	-0.963 (0.625)	0.001 (0.412)	0.186*** (5.533)	-0.090 (1.500)		-4.438** (2.031)	24.899 (1.108)	0.905
	모형 L2 (2.798)	-0.059 (0.511)		-1.582 (1.048)	0.0003 (0.117)	0.197*** (6.208)	-0.088 (1.539)	0.137 (1.414)	-4.891** (2.289)	65.606 (1.669)	0.910
중공업	모형 H1 (0.514)	0.337*** (2.918)	0.075 (0.533)	6.470** (2.325)	0.001 (0.170)	0.135* (1.898)	0.149 (1.259)		-1.796*** (2.771)	66.822 (1.120)	0.929
	모형 H2 (0.718)	-0.055 (2.867)		7.155** (2.644)	0.003 (0.409)	0.192** (2.421)	0.051 (0.392)	0.384 (1.545)	-1.705*** (2.721)	189.61* (1.892)	0.932

주 : ()는 t-통계량이며 *, **, ***는 각각 90%, 95%, 99% 신뢰수준에서 유의적임을 나타냄.

통제변수로 사용된 설명변수중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도급거래의 중층화 정도, 노동장비율, 단일품목이 차지하는 도급비중, 주거래의

위탁기업에 대한 수탁기업의 납품의존도 등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수요 성장률과 계열화정책은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도급거래 단계가 심화될수록 생산성 향상에 정(+)¹의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는 도급거래의 중층화가 진전될수록 1차 수탁기업이 소수화·대형화 되면서 1차 수탁기업의 기술개발능력의 배양 또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거나 생산공정이 단계별로 분리됨으로써 분업의 효율성이 발생하게 됨을 보여준다.

노동장비율이 노동생산성에 정(+)²의 영향을 미치는 분석결과는 기계설비의 확충을 통해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의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도급품목의 유형중 단일품목의 비중이 높을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아짐은 전문화된 특정부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수탁기업이 거래하는 주거래 위탁기업에의 납품의존도가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분석결과는 수탁기업과의 기술협력과 같은 관계가 밀접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거래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의존도 정도가 심화될수록 소재 및 부품을 생산하는 수탁기업은 주거래 위탁기업이 요구하는 제품에 특화하여 생산하게 될 것이므로 기술협력의 가능성은 보다 높아지고, 이를 통해 높은 노동생산성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수탁기업의 주거래 위탁기업 납품의존도가 높을수록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수탁기업의 거래선이 다변화될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는 분석결과는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주거래 위탁기업과 밀착된 거래관계를 유지하되 도급거래의 개방화를 통해 소재 및 부품의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분업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Nobeoka(1995)에 따르면 수탁기업이 충분한 조직적 역량(sufficient organizational capacities)을 가지는 경우에 양자간에 밀착된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거래관계를 여타 기업에게 개방하는 체제의 구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Nobeoka(1995), p. 181]. 그는 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위탁기업간에도 협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거래선이 다변화되어 있는 수탁기업의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수·위탁기업간의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축적해갈 수 있다

고 보고 있다.

수요성장률이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는 수요성장 속도에 부응하여 제품생산을 위해 노동력의 활용을 높이는 경우 노동생산성에 역효과가 나타나게 됨을 시사한다. 한편 지정계열화 정책이 생산성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계열화 품목에 대한 속성을 분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상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계열화 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이 상대적으로 많을수록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하락하고 있음은 계열화 품목의 지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생산방식을 분업화 시키는 데 문제가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산업별로 보면 경공업과 중공업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공업의 경우 도급거래의 확산이 노동생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중공업의 경우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위탁기업의 거래선 다변화 정도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중공업 부문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중공업의 경우 위탁기업의 거래선 다변화가 진행될수록 노동생산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제변수에 있어서는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장비율과 지정계열화정책이 각 산업의 노동생산성에 각각 정(+),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산업을 분류하는 경우 도급거래의 증충화 및 수요효과, 단일품목의 도급비중, 위탁기업의 주거래 위탁기업 납품의존도가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편 투자의 특정성은 중공업 부문에 있어서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투자설비가 많아질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㉔ 분업생산 체제의 수익성 제고 효과

<표19>는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가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의 확산 및 위탁기업의 거래선 다변화가 수익성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제변수로 설정된 제설명변수중 수요성장률과 노동생산성만이 수익성에 정(+)¹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9> 수·위탁생산 분업체제가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

구분		SC	NC	FC	ASR	GRO	PRL	상수항	$\overline{R^2}$
전산업	모형 T3	0.0004 (0.028)	0.013 (0.620)	0.008 (0.403)	-0.039 (0.092)	0.003* (1.896)	0.101*** (4.353)	0.890 (0.112)	0.512
	모형 T4	-0.008 (0.575)	0.031 (1.377)	0.019 (0.937)	0.218 (0.483)	0.002 (1.162)		8.901 (1.049)	0.415
경공업	모형 L3	0.033 (0.885)	-0.002 (0.024)	-0.006 (0.160)	-1.118 (1.035)	0.001 (0.667)	0.160* (1.709)	-6.022 (0.369)	0.181
	모형 L4	-0.016 (0.551)	0.012 (0.161)	-0.0006 (0.687)	-0.104 (0.138)	-0.0005 (0.253)			0.134
중공업	모형 H3	-0.009 (0.710)	0.028 (1.276)	-0.002 (0.098)	0.546 (1.061)	0.0002 (0.135)	0.073*** (3.138)	-2.480 (0.240)	0.573
	모형 H4	-0.017 (1.311)	0.050** (2.268)	-0.003 (0.126)	1.196** (2.332)	0.0004 (0.270)		-0.401 (0.036)	0.496

주 : ()는 t-통계량이며 *, **, ***는 각각 90%, 95%, 99% 신뢰수준에서 유의적임을 나타냄.

산업을 분류하여 분석모형을 추정해보면 경공업과 중공업 부문간에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전체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공업의 경우는 노동생산성이 수익성에 정(+)¹의 영향을 주고, 중공업의 경우는 수탁기업의 거래선 다변화 및 투자의 특정성, 노동생산성이 수익성에 정(+)¹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공업 부문에서 수탁기업의 거래선 다변화가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수탁기업이 얻게 되는 규모의 경제효과 내지 수·위탁기업간 정보교류를 통한 거래비용의 절감효과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중공업 부문에서 투자의 특정성이 수익성을 높인다는 분석결과는 광고가 진입장벽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경쟁을 억제하게 됨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달리 수요요인의 수익성 제고 효과는 산업분류시 나타나지 않고 있다.

㉔ 분업생산 체제의 성장성 제고 효과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가 성장성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수·위탁 분업생산 비율이 높아질수록 매출성장률이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생산

된 제품이 시장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보다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보다 판로개척에 유리함을 시사한다. 한편 도급구조의 중층화가 심화될수록 성장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1차 수탁기업의 기술역량 내지 규모의 경제, 분업에 대한 생산공정 세분화 효과가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요인들에 의한 전체적인 설명력이 매우 낮게 나타나 또 다른 요인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20> 수·위탁생산 분업체제가 성장성에 미치는 효과

구분		SC	NC	FC	ASR	EL	PRL	GP	상수항	$\overline{R^2}$
전산업	모형 T10	1.349** (2.431)	0.148 (0.118)	0.043 (1.518)	-14.942 (1.142)	0.149 (0.376)	0.245 (0.345)	-0.121 (0.136)	-60.794 (1.057)	0.072
	모형 T12	1.373** (2.505)	0.284 (0.239)	0.046* (1.720)	-14.589 (1.123)	0.209 (0.587)		0.009 (0.011)	-59.283 (1.038)	0.079
경공업	모형 L10	2.812** (2.296)	0.011 (0.002)	0.048 (0.639)	-23.635 (0.939)	-1.042 (0.635)	7.654 (1.379)	3.882 (0.056)	-269.89 (1.568)	0.119
	모형 L12	2.729** (2.208)	1.597 (0.333)	0.091 (1.303)	-18.636 (0.740)	0.539 (0.454)		-23.687 (0.356)	-151.23 (1.004)	0.100
중공업	모형 H10	0.642 (0.800)	-7.338*** (4.803)	-0.041 (1.075)	-30.173 (1.398)	-0.291 (0.599)	1.458* (1.874)	-0.851 (0.836)	69.027 (0.863)	0.292
	모형 H12	0.900 (1.116)	-6.610*** (4.387)	-0.017 (0.473)	-26.169 (1.194)	0.056 (0.123)		-0.193 (0.198)	75.892 (0.931)	0.264

주 : ()는 t-통계량이며 *, **, ***는 각각 90%, 95%, 99% 신뢰수준에서 유의적임을 나타냄.

산업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경우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달리 도급구조의 중층화의 성장성 제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외에 경공업의 경우 도급거래의 확산이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중공업의 경우는 경공업의 경우와 달리 노동생산성이 산업성장에 기여하고, 수탁기업의 거래선 다변화가 성장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공업 부문에서 수탁기업이 거래하는 위탁기업의 수가 매출성장률에 부(-)의 영향을 미침은 도급구조의 전속화가 생산성이나 수익성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지만 성장에는 도움이 됨을 의미한다.

수·위탁거래를 통한 매출성장의 속도는 박중구·주현(1997)의 논의와 같이 수·위탁기업간의 긴밀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완성차업체의 부품기업에 대한 생산기술 및 공정관리에 관

한 지도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설비대여가 많아질수록 부품기업의 매출액 규모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같은 맥락에서 거래의 전속성이 수탁기업에 대한 위탁기업의 기술 및 공정관리 지도 내지 설비대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를 반영한다고 보면, 도급거래의 전속화가 수탁기업 나아가 산업전체의 매출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V. 수·위탁기업간 생산분업 체제의 효율화 방안 모색

1. 일본의 수·위탁기업간 분업체제 : 자동차산업의 사례

일본은 효율적인 수·위탁분업체제의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하에서는 일본의 자동차 산업을 대상으로 수·위탁 분업체제의 형성 및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등에 대해 개괄해봄으로써 효율적인 국내의 수·위탁분업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기로 한다.²⁹⁾

(1) 수·위탁 분업체제의 생성과 변화과정³⁰⁾

1950년대 후반에 들어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승용차를 중심으로 대량생산체제로 이행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완성차업체들은 이 시기에 외주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분업생산체제를 구축해갔다. 이러한 배경에는 내제화를 통해 단기간에 집약적으로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기에는 자금 및 인력조달 등에 한계가 있었고, 자동차 산업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의 임금격차, 내제화의 확대에 따른 비효율성을 회피하고자 하는 완성차업체의 전략, 중일전쟁부터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동안 군수를 중심으로 발전한 기계산업에 힘입어 중소기계 부품업체들이 자동차 부품생산과 관련된 일정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할 수 있었던 점 등도 외주화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당시 부품업체는 대부분 기술이 낙후하고 경영수준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품공급의 확대와 생산비용 인하, 품질향상, 납기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완성차업체들은 부품업체를 소수로 집약시키고 조직화하여 장비발주의 보증과 함께 기술지도, 자금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부품조달의 안정화와 부품업체 육성효과를 전유하기 위해 타 완성차업체와의 거래를 거의 금지시키는 배타적 거래관계를 형성하였다.

29) 일반적으로 일본의 도급거래를 논의하는 경우 대체로 자동차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도급 생산방식에 의존하는 전형적 산업이라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도 이러한 점을 중시하여 일본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분업생산 체제의 변화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0) 본 소절에 대한 내용은 임천석(1993)을 중심으로 조철(1992), 유승민 외(1994), 고기영(1995)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본을 참고하기 바란다.

배타적인 거래관계가 형성됨으로써 자본력과 기술력에서 낙후되어 있던 중소 부품업체는 수주량의 안정적 확보와 판매확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배타적 거래관계는 완성차업체에 의해 협력회 결성으로 구체화 되었고, 완성차업체는 자본참가와 임원파견을 통해서 부품업체의 관리를 강화하여 갔다. 높은 현금결제 비율,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어음결제 등도 중소 부품업체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 일본 자동차 산업의 수·위탁분업체제는 대대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모터리제이션(motorization)의 본격화로 일본내에서 완성차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졌고 자동차의 수입자유화로 수입차와의 경쟁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완성차업체들은 자사 내부의 생산체제를 정비하고 개편해가면서 외주부품에 대해서도 생산품목의 정리와 부품업체의 합병 등을 통해 비용인하와 품질향상을 도모하였다. 완성차업체들은 부품업체의 생산규모 확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효과를 얻고 단위부품 발주를 통해 범위의 경제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재편을 통해 완성차업체는 부품업체에 대한 지원을 집중화 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

부품업체에 대한 재편과정에서 완성차업체의 외주화 전략에 변화가 있었다. 분업체제 형성초기에 거의 금지해왔던 배타적인 거래관계를 완화하여 자사와 거래하는 부품업체들이 타 완성차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산비용의 인하를 위해서는 부품생산의 규모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사의 부품업체가 여타 완성차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거래관계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완성차업체는 부품업체에 대한 자본참여를 강화함으로써 부품업체의 거래선 다변화로 야기될 수 있는 자사의 영향력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부품조달의 안정화를 위해 1부품 1사 발주방식에서 복수의 부품업체에게 발주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복수발주 방식은 부품업체간 경쟁을 유발시켜 비용인하 및 품질향상을 촉진하는 측면도 컸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수·위탁분업체제의 재편과정에서 다수의 1차 부품거래업체가 2, 3차 부품거래업체로 재편되어 분업체제의 중층화를 유도하게 되었다. 분업체제의 중층화는 단위부품의 발주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단위부품을 발주를 받은 1차

부품업체는 다양한 공정과 다종의 부품을 내제화하는 데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부품의 외주화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1960년대 들어서의 고도성장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기업규모간 임금의 차이도 1차 부품업체의 부품외주화를 크게 자극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 정책적 시사점

일본 자동차 산업의 수·위탁 분업체제의 변화과정중 나타난 특징을 보면 비용 절감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해 완성차업체의 주도하에 부품업체로 하여금 규모의 경제효과와 범위의 경제효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규모의 경제효과를 위해 부품업체의 합병 및 생산품목의 조정을 통해 대형화를 유도했으며 배타적 거래관계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범위의 경제효과를 위해서 완성차업체들은 부품을 단위부품으로 발주하였고, 이러한 단위부품 발주는 분업생산체제의 중층화를 유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 완성차업체들이 능동적으로 부품업체와의 거래관계를 형성·조정해나갔다는 점이다.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은 자본출자와 임원파견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도 한 몫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자본투자 관계가 이루어져 있고 임원파견이 이루어지는 일본 자동차 산업내 수·위탁기업간 관계는 상호협력적이고 밀착된 관계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본투자와 인적교류의 효과에 대해서는 1991년 현재 한국 및 일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김기찬(1995)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일본이 한국보다 기업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일본의 고유한 사회문화적 요인을 비롯하여 자본적 관계, 인적관계, 계약관계 등과 같은 기업간 관계구조의 특성에 기인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체제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방안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자본적 관계와 인적교류 관계의 정도 등은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의 중층화와 더불어 발생할 수 있는 거래비용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거래비용 절감

수단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표21> 기업간 관계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한·일의 비교

관계의 내용	한 국		일 본	
	빈도수	%	빈도수	%
[자본적 관계]				
0%	128	88.3	52	57.8
1-9%	6	4.1	8	8.9
10-24%	9	6.2	4	4.4
25-49%	1	0.7	13	14.4
50-99%	1	0.7	10	11.1
100%	0	0.0	3	3.3
[인적교류 관계]				
전혀없음	83	57.2	43	47.8
가끔 직원과견	44	30.3	5	5.6
정기적 직원과견	8	5.5	0	0.0
상근직원 과견	9	6.2	30	33.3
중역 겸임	1	0.7	12	13.3
[계약 관계]				
완전한 경쟁관계	32	22.1	18	20.0
비공식적 인적유대관계	11	7.6	4	4.4
공식적 단기계약 관계	30	20.7	9	10.0
공식적 장기계약 관계	72	49.7	59	65.6
표본수	145	100.0	90	100.0

자료 : 김기찬(1995), p. 269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업집단 관계를 형성하는 계열기업을 통해 수·위탁 분업 생산 체제를 구축해옴으로써 계열기업 이외의 기존의 수탁기업에 대해 자본을 출자할 동기가 크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그간의 각종 규제들도 자본출자를 막아온 요인으로 작용했던 측면도 있다. 현재로서도 공정거래법 제7조에 따라 일정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기업결합이 금지되므로 어느 정도 자본출자가 규제되고 있고, 동법 제12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이 타회사 발행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므로 자본출자가 자유롭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자본출자에 대한 규제가 예전에 비해 크게 완화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필요에 따라서는 거래비용의 절감 차원에서 자본출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따라서 앞으로 자본출자로 인한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문제가 된다면 과거와 달리 사후적인 조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정부정책에의 제언

수·위탁 분업생산 유형과 관련해서 미국기업과 일본기업을 대비해서 보면 미국의 기업관계가 시장과 위계조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면 일본의 기업간 관계는 시장과 위계조직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조직 관계가 강조되고 있다[김기찬(1995), pp. 62-65]. 이 중간조직 메카니즘이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공동체적 친화관계와 기능적 위계를 특징으로 하는 집단주의적 문화와 기회주의를 봉쇄하는 일본사회의 관계중심적 사회구조, 공정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관계적 거래형태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배려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과 유사하게 분업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본에 대한 평가와 달리 수·위탁기업간의 납품단가 조정문제 및 대금결제 문제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는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왔고, 나름대로 경제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측면에서 현행의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가 갖는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극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간 거래관계에 대해 수탈, 지배의 가능성이 있는 이중구조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도 곤란하다. 산업단위의 분석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투자의 전속성에 의해서도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가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결과는 거래비용론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면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실증분석을 통해 얻어진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의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분업체제의 방향을 모색해보면 <표2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분업유형의 방향은 수·위탁 분업생산을 통한 경제적 효과와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내에서의 거래특성을 나타내는 전속적 거래 형태의 경제적 효과에 따라 표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우선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가 경제적으로 정(+의 효과를 가져다준다면 소재 및 부품의 거래는 시장이 아닌 준통합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전속적 거래관계

가 경제적으로 정(+)의 효과를 가져다준다면 소재 및 부품의 수·위탁거래가 전속적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거래관계의 경제적 효과에 따라 수·위탁기업간 분업체제하에서 전속적 거래가 바람직한 경우, 수·위탁기업간 분업체제하에서 거래선 다변화가 바람직한 경우, 시장내에서 소재 및 부품이 생산·거래되는 생산방식이 바람직한 경우, 수직통합화가 바람직한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³¹⁾

<표22> 바람직한 분업체제의 모색

구 분		수·위탁거래의 경제적 효과	
		-	+
전속적 관계의 경제적 효과	+	외부화 (수직통합화) 전속화	준통합화 (전속적 거래) 전속화
	-	외부화 (시장거래화) 개방화	준통합화 (거래선다변화) 개방화

그간 수·위탁기업간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호분업적 협력관계가 단순하청에서 계열관계로, 그리고 더 나아가 자본협력, 금융협력, 품질개선 및 공동기술개발 등과 같은 개발협력 등으로 확충·발전되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져 왔다. 기존의 논의에 따르면 먼저 위탁기업이 규모의 경제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시장이 확보되어야 하는 동시에 특정 부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전문적 생산기술을 가진 전문생산업체가 존재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김재원(1983), pp. 31-32 ; 백락기(1994), p. 19].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급거래 구조상의 개편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해보면 <표23>과 같이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의 확산은 경공업 부문에서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경제적 효과를, 중공업 부문에서는 위탁기업의 거래선 다변화가 노동생산성에 정(+)의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공업 부문에서의 위탁기업 거래선 다변화는 성장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수익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다. 따라서 바람

31) <표1>에서와 같이 전속적 거래는 준통합성이 강화된 거래로서 기업내 거래에 상당히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위탁 분업생산의 경제적 효과가 부(-)로 나타나면서 전속적 거래를 통한 효과가 정(+)으로 나타나는 경우 수직통합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직한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가 확산되면서 수탁기업의 거래선이 다변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함을 볼 수 있다.

<표23> 수·위탁거래의 경제적 효과 : 실증분석 결과 요약

구분	생산성	수익성	성장성
전산업	도급거래 개방화(+) 도급거래 중층화(+) 수요성장률(-) 노동장비율(+) 단일부품 도급비중(+) 주거래처 납품의존도(+) 계열화정책(-)	수요성장률(+) 노동생산성(+) 	도급거래 확산(+) 도급거래 중층화(+)
경공업	도급거래 확산(+) 노동장비율(+) 계열화정책(-)	노동생산성(+) 	도급거래 확산(+)
중공업	도급거래 개방화(+) 투자의 특정성(+) 노동장비율(+) 계열화정책(-)	도급거래 개방화(+) 투자의 특정성(+) 노동생산성(+) 	도급거래 개방화(-) 노동생산성(+)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제규범상의 금지보조금 규정준수를 위한 정책지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기술투자, 특히 기술협력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술협력에 대한 지원강화는 수·위탁 분업의 생산성을 높여줌으로써 수·위탁 분업체제의 확산을 유도할 수 있다.

수탁기업의 거래선을 다변화하는 도급거래의 개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대해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다. 수·위탁기업간 거래관계가 순조롭게 개방될 수 있는 경우는 위탁기업의 용인이 있거나 또는 수탁기업의 위탁기업에 대한 협상력이 발휘될 수 있을 때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탁기업의 용인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수탁기업이 거래선을 확대할 수 있는 경우는 여타 위탁기업에 대한 협상력을 갖고 있을 때이므로 보다 중요한 것은 수탁기업의 협상력을 제고시켜 주는 일이다. 그런데 수탁기업의 협상력은 수탁기업의 규모와 기술력에 좌우되기 마련이다. 수

탁기업의 대형화되고 기술력이 향상되면 수탁기업의 협상력이 제고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책의 초점은 수탁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기술력을 제고시키는 데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탁기업의 협상력 강화는 위탁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압력 및 대금결제 지연 등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한편 도급거래의 중층화 정도는 분업효과 내지 중층화의 진전으로 인한 1차 수탁기업의 규모의 경제 효과 등으로 인해 산업전체 차원의 노동생산성에 정(+)¹의 효과를 주고 성장성에도 정(+)²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 측면에서 도급거래의 개방화 이외에도 도급거래의 중층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도급거래의 중층화는 기본적으로 이해당사자인 기업들에 의해 구축되어지는 것이지만 정부정책을 통해서도 중층화가 진전될 수 있다. 일본의 자동차 산업사를 살펴보면 완성차업체간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업체들은 1차 부품기업들을 소수 정예화 하는 전략을 취하였고, 이러한 환경이 도급거래의 중층화를 유도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홍장표(1995), p. 34]. 이외에도 중층화가 가능하도록 정책차원에서 수탁기업의 기술력과 생산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간 시행되어온 정책변수로서 계열화 정책은 노동생산성에 부(-)³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계열화 정책의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데는 계열화 정책을 나타내는 대응변수가 갖는 문제점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좀더 정치된 분석을 통해 계열화 정책의 방향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적어도 인위적인 계열화 품목의 지정 또는 품목선택 등에 문제가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계열화업종제도는 위탁기업마다 소재에서부터 부품, 완제품에 이르는 일관 생산체제를 갖추는 것보다는 부품 등을 수탁기업으로부터 조달함으로써 수탁기업으로 하여금 전문 생산체제를 확립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백락기(1994), p.64]. 본 연구결과는 지정계열화로 인해 수탁기업이 전문 생산체제를 갖추게 되기 보다는 인위적인 거래관계가 유도됨으로써 수탁기업의 나태(shirking)를 유발하게 됨을 반영할 수도 있다.

계열화 정책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협력증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지정계열화업종 및 품목지정 당시 당해 지정계열화품목을 생산하던 중소기업자가 기업규모의 확대 등으로 대기업자가 된 경우로서 그가 동일한 지정계열화품목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경우는 지정계열화품목의 제조를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중소기업자를 보호해준다는 정책적 목표를 담고 있는 것이지만 기업간에 차별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당기간 계열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계열화 정책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협력증진법」상의 장기계약 의무와 관련된 규정이다.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수·위탁거래의 계약은 3년 이상 장기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다[법 제31조 제2항]. 문제는 과태료의 수준보다는 법적으로 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데 있다고 본다. 계약기간의 보장은 협상력이 취약한 수탁기업을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지만 수·위탁기업 모두에 대해 제약요건을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수탁기업에 따라서는 역으로 발주처를 자유롭게 변경하는데 제약이 될 수도 있다. 위탁기업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수탁기업을 선정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쟁력 있는 1차 수탁기업의 선정을 통해 효율적인 공급구조의 중층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보호에 초점을 둔 규정들은 점차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보호규정 폐지로 인한 폐해는 앞서 제시된 수탁기업의 협상력 제고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협력증진법」상의 제14조 제2항의 2차 수탁기업에 대한 동일한 지원 규정도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2차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는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계약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라도 위탁기업으로 하여금 2차 수탁기업에 대해 동일한 지원을 하도록 한 제약적인 규정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위탁기업 차원에서 자사가 필요도 하는 소재 및 부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자율적으로 2차 수탁기업에 대해 지원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등의 혜택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기술협력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의 강화를 통해 수·위탁 분업체제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의 확산을 유도하고, 수

탁기업의 대형화와 기술력 제고를 통해 도급거래의 개방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결합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본출자에 대한 여건 조성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경쟁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경쟁정책은 도급구조의 중층화 유도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계열화정책을 통해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를 인위적으로 조성해옴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제거해줄 수 있다. 그간 계열화정책에 대해서는 시장경쟁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도 개선 내지 폐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표24>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예시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

[목표]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의 효율화

[과제]	도급거래의 확산	도급거래의 개방화	도급거래의 중층화
	* 분업체제 확산	* 규모의 경제효과 * 소재·부품공유효과	* 분업단계 세분화

생산기반 효율화	수탁기업 협상력 제고	위탁기업 주도 도급구조 재편
-------------	----------------	--------------------

기술협력	수탁기업 기술력 제고	수탁기업 대형화	경쟁확산
------	-------------------	-------------	------

[수단]

- | | | |
|---------------------------|-------------------------|-----------------------|
| - 기술지원 및 공동
연구 인센티브 부여 | - 구조조정용 기업결합
인센티브 부여 | - 완제품시장의 경쟁 |
| - 정부부담을 제고 | - 자본출자 여건 조성 | - 계열화정책 개선 |
| | | - 법제상의 인위적
보호규정 개선 |

VI. 결 론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는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본 연구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간에 이루어지는 소재 및 부품의 거래관계 즉,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의 형성요인 및 산업성과를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정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990년부터 1996년까지의 중분류 산업별 자료를 이용한 분업생산 체제 결정요인 및 산업성과 분석결과중 주요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투자의 특정성은 도급거래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거래특정적인 투자가 많아지는 경우에 거래비용의 절감동기에서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가 확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의 확산에는 저임금을 활용하기 위한 동기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화 정책은 수·위탁 분업생산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경기여건이 악화될수록 전속적 거래를 탈피 도급거래의 개방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성과와 관련하여 도급거래의 확대는 중공업 부문에서의 노동생산성 및 매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재 및 부품의 공유화 효과 내지 수탁기업이 누릴 수 있는 규모의 경제효과를 가져다주는 도급거래의 개방화는 중공업 부문의 노동생산성과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도급거래의 개방화가 중공업 부문의 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통제변수로서 도급거래의 중층화 정도는 전체산업을 분석대상으로 한 경우에 생산성, 성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업성을 나타낼 수 있는 수탁기업의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 의존도는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계열화 정책은 산업의 노동생산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열화 정책의 생산성 하락 효과는 산업을 분류한 분석의 경우에도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분석기간 및 산업단위 자료상의 한계 등을 고려해볼 때 잠정적인 결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만 제한적이거나 정부정책에 대해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급거래의 확산, 도급거래의 개방화 및 중층화를 심화시키기 위한 여건

이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도급거래의 개방화는 도급거래의 질적 변화를 초래하고 도급거래의 공정성을 도모하는 여건을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촉진을 통해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도급거래의 개방화는 수탁기업의 협상력을 높여줌으로써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수탁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탁기업을 대형화 시키고 수탁기업의 기술력을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가 재편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수탁기업의 대형화가 가능하도록 기업결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술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의 분담비중도 높여야 할 것이며, 수·위탁기업간 기술협력을 높일 수 있는 금융 및 조세지원의 강화도 필요하다. 기술협력에 대한 지원강화는 도급거래의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외에 중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경쟁도를 높이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협력증진법」을 통해 특정 품목에 대해 인위적으로 수·위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위탁기업 내부에서 생산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품목의 경우 인위적인 계열화 정책은 생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인위적으로 수·위탁기업간 분업체제를 통해 생산·납품하게 하는 경우 수탁기업의 나태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의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의 제시를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진전된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기업차원의 거래단위를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는 개별 기업단위간에 거래단위로 일어나는 계약행위이다. 산업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분석은 자료통합에 따른 편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둘째, 분업생산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수준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일 산업내에서도 높은 수준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소재 및 부품과 저급의 기술로도 생산이 가능한 소재 및 부품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위탁기업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는 경우에 고급기술을 요하는 소재 및 부품의 위탁생산은 자제할 가능성도 높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술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도급거래의 장단기 여부가 분업생산 체제의 효율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도급거래의 기간에 대한 연구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거래기간에 대한 자료접근이 어려워 이러한 문제를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수·위탁 분업생산체제의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의 제시를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진전된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고기영, “전후 일본 자동차 산업의 중층적 분업 구조 형성 과정,” 『기업경제』,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5.11, pp. 12-1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1998.8.

권명중, “중소기업 수직계열화와 자원배분의 동태적 효율성,” 『중소기업연구』, 중소기업학회, 1997, pp. 25-40.

김경목·정승화, “하도급네트워크와 하도급기업의 성과 : 한국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1997, pp.191-212.

김기찬, 『시스템간 경쟁구조를 향한 대기업-중소기업간 분업적 협력모형의 개발 : 일본의 사례연구와 응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원, 1995.9.

김병욱, “자동차산업의 산업연관관계 분석,” 『자동차산업연구』, 기아경제연구소, 1996, pp. 50-55.

김재원, 『도급조직의 현황 및 도급거래의 추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83.

김주훈·조관행, 『개방화와 하도급체제의 개편』, 한국개발연구원, 1991.6.

김현정, “자동차 부품 : 완성차 업체에 따라 경영성과 차이 크다,” 『실물경제』, 산업연구원, 1995, pp. 44-47.

김호진·하재룡, 『자동차 부품공업의 노사관계』, 집문당, 1997.

박중구·주현, 『한국 자동차산업의 도급관계와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1997.

- 백락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모형개발 연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94.4.
- 복득규, “크라이슬러는 어떻게 미국식 계열을 형성했는가,” *SHB*, November-December 1996, pp. 191-217.
- 복득규, “부품기업의 거래선 다변화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 한국자동차 산업의 경우,” 『한국산업조직학회 학술대회』, 1997, pp. 153-168.
- 서재명, “경쟁과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정책비전』, 연구총서 제1집, 한국중소기업학회·중소기업연구원, 1995.12, pp. 117-148.
- 어윤배, “중소기업육성정책의 법이념과 체계,”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정책비전』, 연구총서 제1집, 한국중소기업학회·중소기업연구원, 1995.12, pp. 14-36.
- 유승민·이성순·김주훈·박병형·정진성·김승진,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당면 과제와 산업조직정책』, 한국개발연구원, 1994.
- 이규억,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산업조직적 관계,” 『한국개발연구』, 제8권, 제3호, 한국개발연구원, 1986.9, pp. 2-30.
- 임천석, 『일본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하청분업생산의 역할』, 정책연구 93-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4.
- 정병휴·윤창호, 『한국의 중소기업과 계열화』, 한국경제연구원, 1986.12.
- 정진성, 『한국 완성차업체의 부품업체 육성전략과 부품업체의 대응 : H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1994.
- 조철, “일본 하도급 거래관계의 변화과정과 특징,” 『산업동향』, 산업연구원, 1992.6, pp. 33-52.
- 주현, “협력기업 계열화 정책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업경제』,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5.11, pp.41-50.
- 주현,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위한 공정화시책의 현황 및 개선방향,” 『기술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 1998.7, pp. 1-22.
- 중소기업계열화촉진협의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

- 을 위한 업무편람』, 1996.12.
- 중소기업청, 『지정계열화 업종 및 품목 정비』, 보도자료, 1998.12.30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각년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을 위한 계열화 시책 편람』, 1993.
- 최동규·김광희,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 : 과제와 개선방향』, 중소기업연구원, 1994.12.
- 하헌식, 『한국 제조업의 하도급에 관한 연구 : 하청론과 거래비용론의 검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0.12.
- 한국경제연구원, “중소기업부문,” 『최근 경제현안과 대책』, 1998.10, pp. 221-303.
- 홍장표, 『한국에서의 하청계열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8.
- 中田善啓, 『マーケティングと組織間關係』 同文館, 1986.
- Argyres, N., "Evidence on the Role of Firm Capabilities in Vertical Integration Decision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17, No. 2, February 1996, pp. 129-150.
- Carlton, D. W. and J. M. Perloff, *Modern Industrial Organization*, Scott, Foresman/Little, Brown Higher Education, 1990.
- Coase, R. H., "The Nature of the Firm(1937)," *The Nature of the Firm : Origins, Evolution, and Development*, edited by O. E. Williamson and S. G. Winter,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pp. 18-33.
- Coase, R. H., "Industrial Organization : A Proposal for Research," *The Firm, the Market and the Law*,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pp. 57-74.
- Dyer, J. H., "Specialized Supplier Networks as a Source of Competitive Advantage : Evidence from the Auto Industr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17, No. 4, April 1996, pp. 271-291.

- Hill, C. W. L. and R. E. Hoskisson, "Strategy and Structure in the Multiproduct Firm,"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12, No. 2, 1987, pp. 331-341.
- Hsiao, C., *Analysis of Panel Dat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Imai, K. and H. Itami, "Interpretation of Organization and Market : Japan's Firm and Market in Comparison with the U.S."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2, 1984, pp. 285-310.
- Judge, G. G. et al., *Introduction to the Theory and Practice of Econometrics*, John Wiley & Sons, 1982.
- Levy, D. T., "The Transactions Cost Approach to Vertical Integration : An Empirical Examinat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LXVII, No. 3, 1985, pp. 438-445.
- Nobeoka, K, "The Influence of Customer Scope on Supplier's Performance in the Japanese Automobile Industry," *IMVP Working Paper*, 1996, pp. 167-194.
- Monteverde, K. and D. J. Teece, "Appropriable Rents and Quasi-vertical Integratio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25, 1982, pp. 321-328.
- Titman, S., and R. Wessels, "The Determinants of Capital Structure Choice," *Journal of Finance*, Vol. 43, 1988, pp. 1-40.
- Williamson, O., "Hierarchical Control and Optimum Firm Siz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5, No. 2, 1967, pp. 123-138.
- Williamson, O., "Transaction Cost Economics : the Governance of Contractual Relation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32, 1979, pp. 233-261.

<부록1> 수탁기업체협의회의 중점 추진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위탁기업의 장단기 사업계획에 대한 수탁기업의 동참 및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 총회, 최고경영자 세미나를 통해 위탁기업의 발전방향 및 정책을 제시하고 기업환경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전략을 수립 - 위탁기업별로 수탁기업체의 단지화, 협동화를 통해 공동 기술개발 및 이업종 교류에 의한 품질향상, 원가절감의 여건 조성
위탁기업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 수탁기업체에 대한 기술·경영지도 - 수탁기업체에 대한 각종 교육 및 선진국 견학 - 해외지점을 통한 협의회 회원 생산부품의 수출지원 - 수입대체 국산개발부품 사용 - 수탁기업체에 대한 연계보증 확대 - 수입부품의 국산 대체개발 지원
수탁기업의 이행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근대화 - 자체 기술증진을 통한 품질향상 촉진 - 경영합리화를 통한 원가절감 - 협의회를 통한 위탁기업체와 협력체제 확립 - 납기준수

자료 : 서재명(1995), p. 139.

<부록2> 분석을 위한 산업분류 내역

산업코드	산 업 명
D15	음식료품
D17	섬유제품
D18	의복 및 모피제품
D1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D20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
D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D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품
D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D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D26	비금속광물제품
D27	제1차 금속
D28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장비제외)
D29	기타 기계 및 장비
D30	사무계산 및 회계용 기계
D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D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D33	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D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D35	기타 운송장비
D3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주 : D30, D31, D32를 동일산업으로, D34 및 D35를 동일산업으로 분류하여 총 17개 중분류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함.

<부록3> 경공업 및 중공업 분석모형에 대한 상관분석

경공업	UC	ASR	IP	DR	WD	GP
UC	1.0000					
ASR	0.2682	1.0000				
IP	-0.0705	-0.0149	1.0000			
DR	0.0816	0.2222	-0.1365	1.0000		
WD	-0.0586	0.1520	0.0003	0.0139	1.0000	
GP	-0.0058	0.0287	-0.0245	0.4888	0.0139	1.0000

중공업	UC	ASR	IP	DR	WD	GP
UC	1.0000					
ASR	-0.1556	1.0000				
IP	0.2939	0.0032	1.0000			
DR	-0.1130	0.1420	-0.0439	1.0000		
WD	0.0377	-0.1395	-0.1510	0.1329	1.0000	
GP	0.0681	-0.2831	-0.0097	0.2477	0.3123	1.0000

경공업	SC	NC	FC	ASR	GRO	EL	ST	PRL	MSU	GP
SC	1.0000									
NC	-0.1842	1.0000								
FC	-0.1195	-0.5914	1.0000							
ASR	-0.2636	-0.2948	0.1803	1.0000						
GRO	0.3121	-0.1510	0.2450	-0.1877	1.0000					
EL	-0.3437	-0.1318	0.5907	-0.0615	0.1434	1.0000				
ST	0.2177	0.0360	-0.1126	-0.5739	0.0942	-0.0835	1.0000			
PRL	-0.3585	-0.1397	0.6486	0.0549	0.2178	0.8459	-0.2018	1.0000		
MSU	-0.1243	-0.5952	0.9997	0.1875	0.2477	0.5895	-0.1136	0.6477	1.0000	
GP	0.1701	-0.0117	-0.1188	0.0287	-0.0459	-0.2194	0.1875	-0.3262	-0.1160	1.0000

중공업	SC	NC	FC	ASR	GRO	EL	ST	PRL	MSU	GP
SC	1.0000									
NC	0.1474	1.0000								
FC	-0.1633	-0.5000	1.0000							
ASR	-0.2005	0.1507	-0.0158	1.0000						
GRO	0.0827	-0.5244	0.1999	-0.2631	1.0000					
EL	-0.2943	-0.1483	0.4378	-0.3641	0.0894	1.0000				
ST	0.2905	-0.2580	0.4966	-0.1926	0.1802	0.3823	1.0000			
PRL	0.1093	-0.0047	0.3956	-0.1525	0.1620	0.4294	0.4882	1.0000		
MSU	-0.1599	-0.5007	0.9999	-0.0118	0.2011	0.4328	0.4968	0.3956	1.0000	
GP	0.3691	-0.1466	0.0041	-0.2831	0.1496	-0.1201	0.1673	0.2660	0.0055	1.0000

<부록4> 관찰되지 않은 시간·산업 특정적 요인 고려 여부 검정 : 경·중공업

[경공업]

모형구분		RSS _P	DF _P	RSS _F	DF _F	F-통계량
SC		17529.2	42	2530.1	29	13.22***
NC		1532.1	44	498.6	31	4.94***
PRL	모형L1	690.5574	40	179.5344	27	5.91***
	모형L2	691.3102	40	170.1670	27	6.36***
PFT	모형L3	200.2559	42	101.3204	29	2.18**
	모형L4	200.6831	43	111.3057	30	1.85
GRO	모형L5	924378.6	41	667787.1	28	0.83
	모형L6	967263.7	42	673657.7	29	0.97

주 : 1)**, ***는 각각 95%, 99% 신뢰수준에서 유의적임을 나타냄.
2)모형구분은 <표>를 참고

[중공업]

모형구분		RSS _P	DF _P	RSS _F	DF _F	F-통계량
SC		24333.2	63	7912.7	47	6.10***
NC		8408.4	65	3630.7	49	4.03***
PRL	모형H1	19644.1	61	1706.6	45	29.56***
	모형H2	19627.6	61	1632.5	45	31.00***
PFT	모형H3	156.4416	63	56.79467	47	5.15***
	모형H4	164.6939	64	68.47216	48	4.22***
GRO	모형H5	826872.7	62	706448.7	46	0.49
	모형H6	873712.7	63	707799.4	47	0.69

주 : 1)***는 99% 신뢰수준에서 유의적임을 나타냄.
2)모형구분은 <표>를 참고

Abstract

The Effects of Subcontracting Systems on Performance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Policy Implication

Jun, In Wo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subcontracting systems on productivity, profitability and growth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major empirical result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expansion of subcontracting system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growth of industries. (2) The more parent firms with which a subcontractor deals increase in number, the higher labor productivity goes up. (3) The stratification of subcontract relationships promotes the growth of industries and elevates labor productivity. These results mean that we can improve the industrial performance through the subdivision of production process.

Because of the lack of relevant data, some reservations must be made about conclusions. To a limited extent, however, we may suggest tha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focus on rebuilding the structure of subcontracting systems. The directions of polic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reate the environment for expanding the subcontracting systems. The financial and tax support for the technical tie-up between parent firm and subcontractor can be helpful to spread the subcontracting systems.

Second, to make the subcontracting systems open, we needs to strengthen the bargaining power of subcontractor. To enlarge the size of subcontractor and to improve its technical level can give a chance to increase the bargaining power of subcontractor.

On the other hand, it is important to drive a strong competitive condition into the markets in which parent firm participates. It can induce the differentiation of production process that raises the growth rate and the labor

productivity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